

2000-58

<http://www.maf.go.kr>

630.951  
L293 L  
2001  
V.1

#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관계규정해설

총 5권중 제1권

2000.11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국회 도서관



00853988



이 엠블럼은 한국농업의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체인 동시에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요소이다.

새벽의 형상을 통하여 무한히 발전할 한국농업의 가능성과 친환경농업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정책지원 인터넷 E-mail주소의 @형상을 활용하여 신지식·정보화된 농업과 서로 조화되고 상생(相生)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전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농업의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색상은 청·녹·황·적의 '색동'을 표현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였으며 청색과 적색의 변화로 조화와 화합을 표현하였다.



한국농업의 마스코트인 '새농이'는 '새로운 농업'이라는 의미로 발전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엠블럼의 기본요소인 푸른색색을 의인화하여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친근한 농업을 나타내는 어린이의 이미지로 앞으로 발전할 한국농업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2001. 2. 05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1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입 문 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 차 례

##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주요변경사항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	1
1. 배경 .....	3
2. 주요골자 .....	4
3. 주요 변경사항 .....	7
4. 해설 .....	9
제1장 총칙 .....	9
제2장 자율사업 .....	14
제3장 공공사업 .....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	24
제5장 보칙 .....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	27
1. 배경 .....	29
2. 주요골자 .....	30
3. 주요 변경사항 .....	34
4. 해설 .....	38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050호) .....	57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49호) .....	109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137
※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	231



##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 확충 .....	239
1.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자율) .....	241
2. 토양개량사업(자율) .....	297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재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	317
4. 발기반정비사업(공공) .....	327
5. 경지정리사업(공공) .....	356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공공) .....	399
7. 배수개선사업(공공) .....	415
8.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공공) .....	438
① 수리시설개보수 ② 저수지 준설사업	
③ 방조제개보수	
9. 농촌용수개발사업(공공) .....	473
① 대·중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공공) .....	515
①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개발조사	
③ 농업용수 관리자동화 ④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⑤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1.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공공) .....	570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12. 지역특화사업(공공) .....	605
II. 농업기계화 .....	631
13. 농기계구입지원(자율) .....	633
14.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	635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15. 농기계생산지원(공공) .....	637
III. 생산 및 유통개선 .....	639
16.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지원(자율) .....	641
17. 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	665

##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I. 생산기반 확충 .....	669
18. 고품질 우량종자개발(공공) .....	671
II. 사육기반확충 .....	681
19. 사료 및 기자재 생산기반확충사업(자율) .....	683
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② 사료제조시설 및 원료구입지원	
③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	
20.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자율) .....	723
21. 축산 계열화사업(공공) .....	751
① 가축계열화 ② 경주마육성	
22.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공공) .....	775
23. 가축개량사업(공공) .....	839
III. 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	887
24.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	889
① 농산물물류표준화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③농산물 규격출하	
25.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	935
① 산지농협유통활성화 ②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	
③ 공동규격출하촉진 ④ 인삼생산장려	
26.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자율) .....	973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③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	
27.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	1010
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② 농산물공판장건설	
③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④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28.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기반확충사업(공공) .....	1052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 ② 소비자단체 물류시설지원	
③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 ④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지원	
29.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	1099
30. 채소 수급안정 사업(공공) .....	1108
3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	1115
32. 농산물 수출진흥사업(공공) .....	1119
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②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 ③ 농산물 물류센터건설	
33.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사업(공공) .....	1165
IV.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1185
34.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공공) .....	1187
35.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사업(공공) .....	1195
① 도축도매시설 ② 가공판매시설	
③ 축산물등급판정 ④ 축종별 자율사업	
36. 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사업 .....	1283
① 축산물 안정성강화 ② 가축공제	
37. 축산물검사 및 가축방역사업(공공) .....	1295
① 축산물검사 ② 가축방역	
38.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	1321

## 제4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	1331
39.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자율) .....	1333
①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② 친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40.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자율) .....	1386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농산물가공산업 경영지도 ③ 특산단지육성	
41.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자율) .....	1477
II. 기술개발 .....	1505
42. 농업기술개발사업(공공) .....	1507
43.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	1516
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44. 기술보급사업*(공공) .....	1535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4-H회원과재활동지원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III. 인력육성 .....	1575
45. 후계농업인육성지원(자율) .....	1577
46.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	1621
47.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	1634
IV. 소득보전 .....	1675
48.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	1677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③ 논농업 직접지불	
49.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공공) .....	1738
50. 농가도우미지원(공공) .....	1740
V. 소득원 개발 .....	1753
5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자율) .....	1755
52. 농공단지육성사업(공공) .....	1803
53. 한계농지정비사업(공공) .....	1820
54.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	1834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I. 생활환경개선 .....	1845
55.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공공) .....	1847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 처리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56.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	1926

## 제5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 확충 .....	1957
57.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	1959
58. 영림계획(자율) .....	1968
59. 사유림협업경영(공공) .....	1973
60.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	1978
① 임도시설 ② 사방사업	
II. 생산 및 유통개선 .....	1989
61. 임산소득증대(자율) .....	1991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정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62. 임산물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시설지원(자율) .....	2017
①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② 합판·보드류시설지원	
63. 산림조합육성(공공) .....	2034
64.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	2038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III. 인력육성 .....	2083
65.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	2085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 기술지도(공공) .....	2090
IV. 산림복지 기능증진 .....	2101
6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	2103
68. 산촌종합개발(공공) .....	2110
V. 산림자원조성 .....	2119
69. 해외조림사업(자율) .....	2121
70. 산림조성(공공) .....	2128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산림생태보전	

# I . 농림사업실시규정해설

# 여 백

## 1. 배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 그동안, 유사사업 통합,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함

## 2. 주요골자

### < 기 본 방 향 >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조역량 제고
-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

####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안내기관은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농업인들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들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들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회와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농업인들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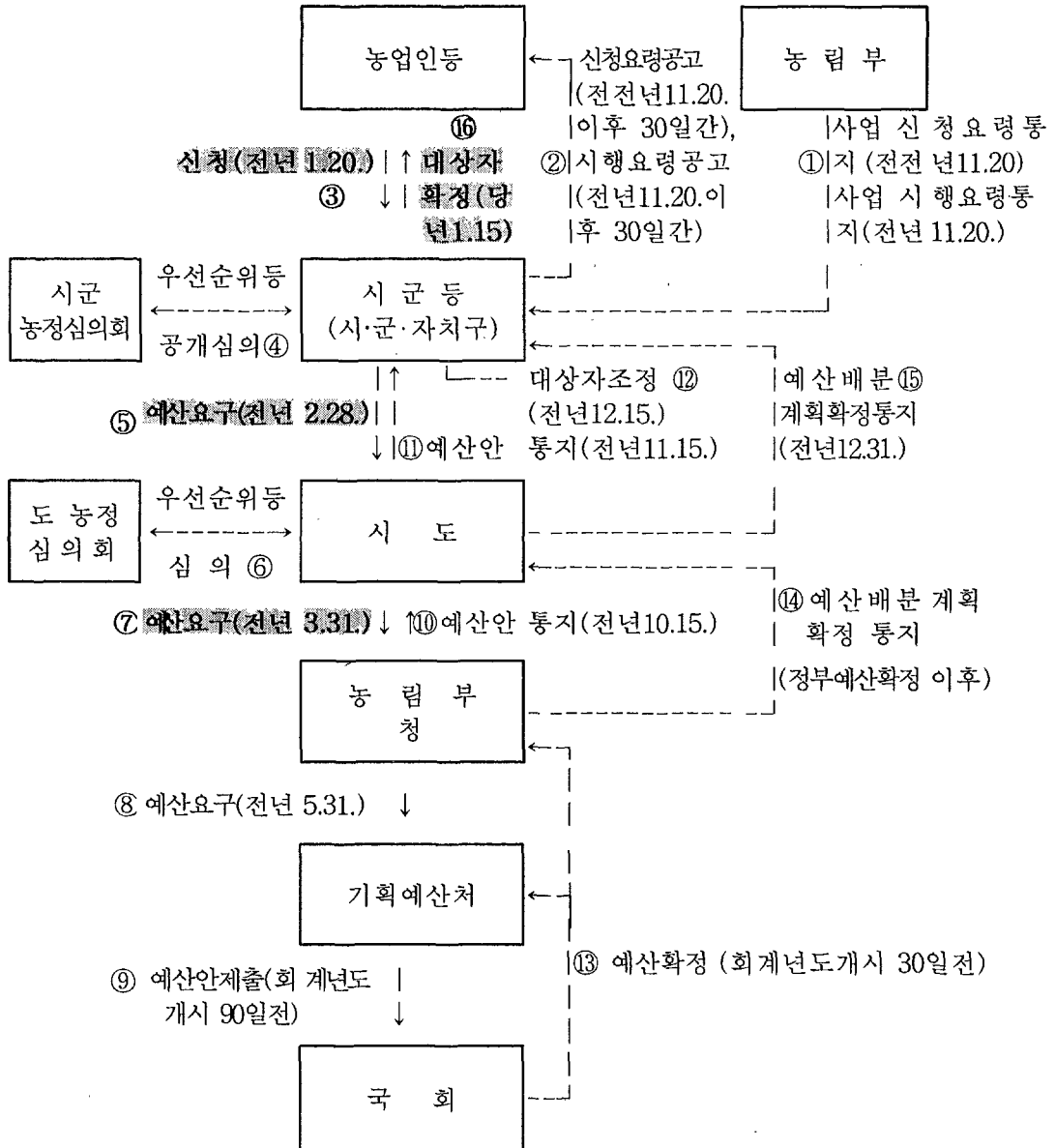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① 유사사업의 통폐합	○ 134개 (자율 40, 공공 94)	○ 99개 (자율 22, 공공 77)	○ 87개(자율 18, 공공 69)	○ 74개(자율21, 공공53) ⇒(2001)70개 (자율21, 공공49)
② 경영장부 (경영일지) 기록 의무 이행 강화	○ 사업자에게 경영장부 (경영일지) 기록의무 부여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의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 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고(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신청서 심사시 지원 우선 순위에 차별성 부여 (제14조제3항) -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선 순위 부여	- 미기록 또는 현저히 기록을 소홀히 한자에게는 순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자구 삭제	-
③ 경영교육 이수 강화	-	○ 사업신청서 심사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동일조건에서 미이수자보다 지원우선순위 부여 (제14조제4항)	-	-
④ 사업신청에 탄력성 부여	-	○ 정부시책방향을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하고(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내용이더라도 정부시책방향에 어긋나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주도록 사업시행지침에 명시 (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심의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추가사업 신청기간은 사업추진 가능여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수시 신청토록 예외 인정

사 항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⑤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강화	-	-	○ 농업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 우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본 규정에 명시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지원요건을 구비 하고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한 법인이 선정(제41조)	○ 나환자 정착촌 안의 분뇨처리 시설사업은 법인설립후 신청가능
⑥사후관리 책임보완	-	-	○ 5억원이상인 사업장은 농림부, 청의 사업부 서에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가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한 후 의견 기재 ○ 사업계획, 집행, 사후 관리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축· 인·삼협 임직원이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제39조제6항)	
⑦사업자별 지원실적 공개	-	○ 시군구 및 농·축·임· 삼협의 홍보지, 반 상회보, 농업인 교 육자료 등을 통하여 정부자금 지원실적 공개 (제40조)		

## 4. 해설

### 제1장 총칙

#### 가. 정의(제2조)

- (1) **농림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제2조제1호)
- (2) **자율사업** :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제2조제2호)
  - **농업인등** : 농업인·임업인(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축·임·삼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업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농촌과 관련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 (3) **공공사업** :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또는 정부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제2조제3호)
- (4) **총괄부서** :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사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 [설명] \* 농림부 : 투자심사담당관실  
\* 청 : 기획예산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사업의 추진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 『해석기관』이 이에 해당됨

## 나. 적용범위 등(제3조)

(1)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함**(제3조)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설명] \* 농업인등과 직접 관계없는 특정업체 또는 단체 등에 특정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하여야 하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인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2) 농림사업분류표의 내용(제3조제2항 별표1)

- 대분류(4개)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농촌개발, 임업및산촌구조개선**
- 중분류(10개)
  - 공통(8개) : 생산(사육 또는 경영)기반확충, 농업기계화, 생산및유통개선, 기술개발, 인력육성, 소득보전, 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 특별(2개) : 환경임업육성, 산림복지 및 자원조성
- 소분류(단위사업(70개)) : 자율사업 21개, 공공사업 49개

[설명] 정부예산과목의 “세항”(기금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한 그보다 범위를 넓게 설정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3조의2)

(1) 농림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제3조의2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시행요령에 열거되지 않은 세부사업내용이라도 정부시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청가능함을 명기함

[설명]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통상적으로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기 전에 사업예정년도에 적용할 농림사업분류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에 통지함(정부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전년도 8. 31.까지)

(2)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다음의 기관에 통지함(제3조의2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농림사업지침서는 총5권으로 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제2권 내지 제5권은 농림사업분류표상의 4개 대분류를 각권으로 함)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 제4권 : 농촌개발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 통지할 기관

-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 농림사업 안내기관(제8조제1항)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3)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함(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농림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외의 사업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3조의2제7항)



라. 농림사업심의위원회(제4조 내지 제4조의6)

- (1) 구성(19인이내)(제4조) : 농림부 차관(위원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부위원장), 농림부 차관보·각국장(공보관·감사관·농업정보통계관 포함), 청의 기획관리관,
- (2) 기능(제4조의3)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농림사업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회의(제4조의4) :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 다만,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경우는 2,4,7,9월의 마지막주중 각1회에 한함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1월내에서 연기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기
    - 2, 4월은 예산요구 일정 감안
    - 7, 9월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및 당년도 사업시행여건 변화에 대처

[설 명]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소집을 제한한 것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엄격하게 적용
- (4)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제4조의6)
  - 구성(15인이내)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실무위원장),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무부위원장), 농림부의 국장급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소속의 주무과장,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 제2장 자율사업

###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및 제8조)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요령 등을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문의 형식은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함)(제7조)

○ 공고할 사항(제7조제1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제7조제2항)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함(제7조제3항)

(2) 안내기관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8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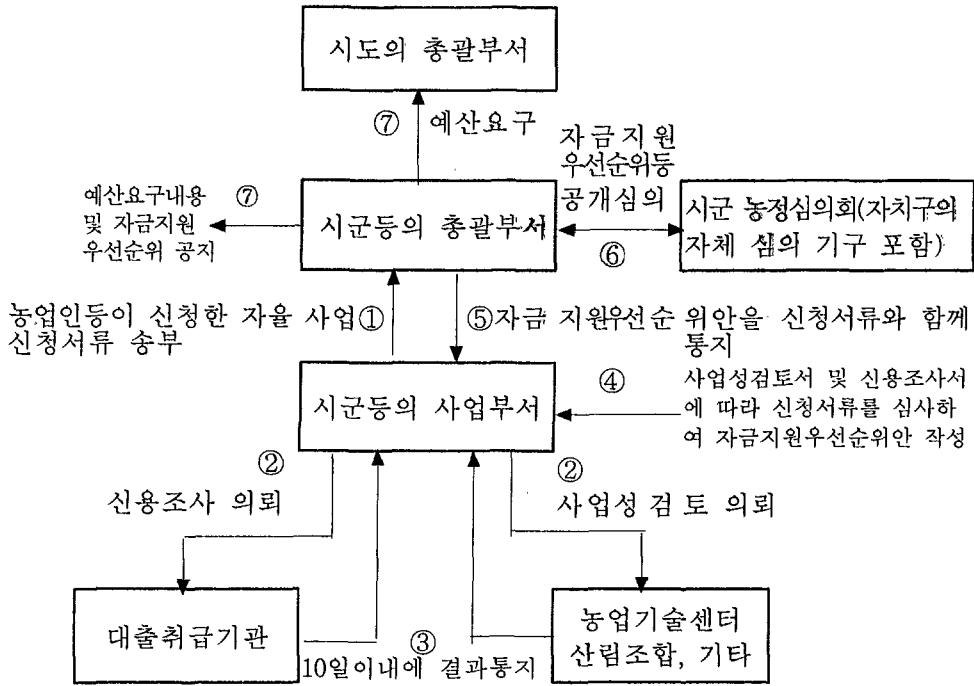
○ 안내기관의 장은 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내 및 상담에 응함(신청자격 및 절차, 사업계획 작성, 신청자의 기술수준 등, 인·허가 사항,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제8조제2항)

## 나. 자율사업의 신청절차(제9조 및 제10조)

-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음(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항)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이를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해야 함(제9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9조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2) 다음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9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 : 2천만원
  - 기타사업 : 3천만원
- (3) 신청기한(제10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 설명 ]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 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1조 내지 제16조)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제12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및 제2항)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축·삼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된 사업(산림청 소관)
- 기타 : 위 소관의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 ② 신용조사(제13조 별지 제6호서식)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 ④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농·축·삼협·산림조합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 구성·운영(제14조)**

(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축·삼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제14조제3항)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에서 미이수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14조제4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14조제5항)

⑥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제15조)

- 시군 농정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로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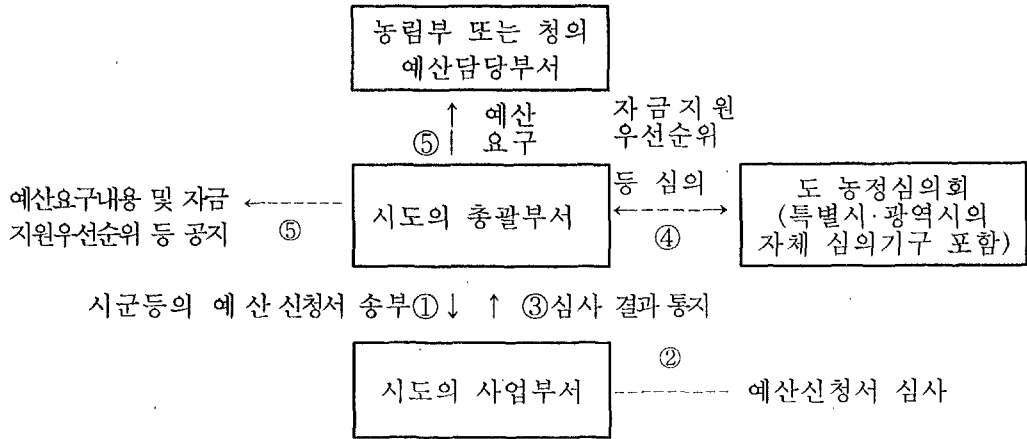
- 시군 농정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 (생산자단체장 5인, 농림어업인 대표 8인)**가 참여하도록 유도(미달시는 별도 심의기구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같음)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나중에 시군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와 함께 **도 농정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게 함(제17조제3항)
- 시군 농정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16조)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자금지원우선순위 또는 지원예정금액의 변경가능성, 위 사항의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이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7조)



<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을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제18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18조제1항)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18조제2항)

<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19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19조제1항)
-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19조제2항)
- (3) 시장군수등은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1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 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20조 내지 제23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20조)

[설명] 정부예산 확정기한 : 정부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30일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2일이 법정시한임. 그러나 국회사정에 의하여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1조)
- (3) 시군등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홍보지와 반사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22조, 제23조)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 사유>

-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아.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24조)

- (1)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하여야 함(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 (2) 위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2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 제3장 공공사업

#### 가. 공공사업의 신청(제25조)

(1)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용자대행기관에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사업부서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당해일)까지 신청(제25조제1항·제2항, 제4항)

- 용자대행기관 : 농협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용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제25조제1항)
- 용자대행기관이 직접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같음함(제25조제1항)
- 공공사업 신청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효과의 확산 방안, 사업준비상태, 사업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제25조제2항)

(2)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용자대행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송부함(제25조제3항)

[설명] 사업시행지를 관할하는 시군등과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당해 시군등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나. 공공사업의 예산반영(제26조)

- (1)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읍자대행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시군 농정심의회 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자율사업의 절차 준용)를 거쳐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한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요구를 함(제26조제1항)
- (2)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공공사업의 예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율사업의 절차를 준용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확정하고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예산요구를 함(제26조제2항)
- (3)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에 반영함(국고는 예산청에 요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제26조제3항)

<검토할 사항 : 제2장-마-(2) 참조>

다. 정부예산안의 통지,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등 절차는 자율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함(제28조)

- 사업신청 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제8조)
- 신청서식(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신청서 심사 및 예산요구 절차(제11조 내지 제18조)
- 정부예산안 통지 및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19조 내지 제21조)
-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및 공지(제22조, 제23조)

##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29조)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 경제성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 여부
  - 기대효과 등
- (2)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29조제3항)
-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29조제4항)

###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0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선정을 요구함(제30조제1항)
  -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요구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0조제2항)

다. 신규사업의 선정(제31조)

(1)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4조의4 제2항)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함(제31조제1항)

○ 위원회 개최일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31조제3항)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31조제4항)

[설명] 이때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32조) :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당해 제안자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사업신청서 제출(제9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11조 내지 제13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14조)

○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제15조)

## 제5장 보칙

-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다만 용자대행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용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음(제39조제1항)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부 사업국 등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서기관, 사무관)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한 후 의견을 기재토록 함(제39조제2항)
  - 지원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39조제3항)
- 시설등에는 농림사업안내표지를 잘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39조제4항 별표2)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함(제39조제5항)
-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축·임삼협조합(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제39조제6항)
- 농림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축·삼협·산림조합의 홍보지와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0조)  
[설명] \* '94-'96 지원자 명단 및 금액을 '97. 1-2월중에 농·축협조합의 경영평가보고서 및 동 기간중에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 영농준비교육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고  
\* 앞으로도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지원자 명단 및 금액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할 계획임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41조 별표 3)

## 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해설

여 백



## 1. 배 경

-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 본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함

### <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용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용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 < '98. 7. 23. 주요개정사항 >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
- 부당사용한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강

###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 < '99. 11. 8. 주요개정사항 >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 2. 주요골자

### <기 본 방 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 금융기관거래자료를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다만,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제외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무거운 것을 적용

####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를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 금융기관거래자료중 하나에 의하여 사업검정실시

#### 라.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 마. 대출원장 관리

- 용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 용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자금과에 요청후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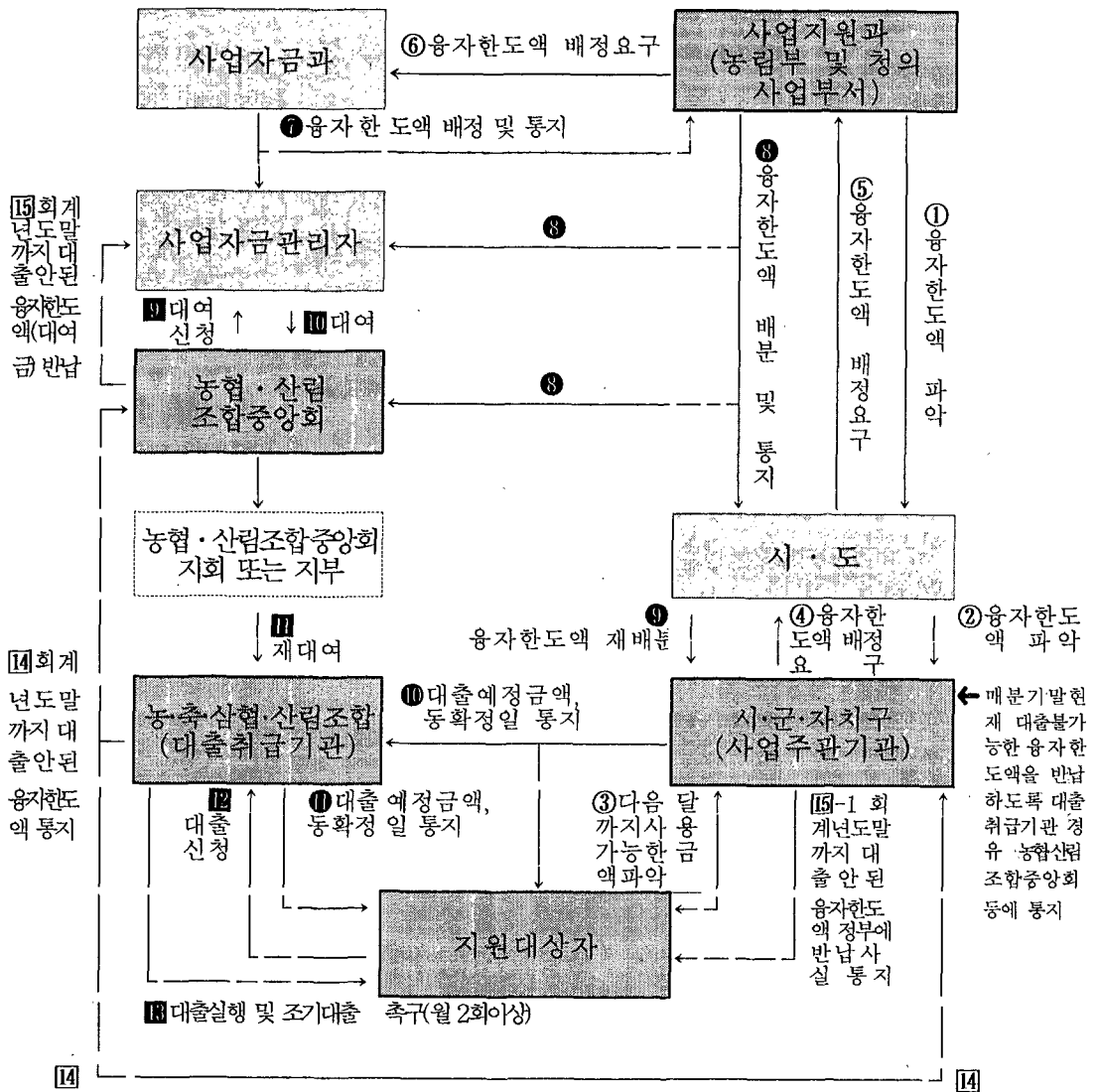
##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협·삼림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1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 자. 용자 절차도



(주) ○ 위 그림은 시·군·자치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축·삼협·산림조합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용자절차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자치구가 아니거나 농협·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위 그림에 정한 절차중 일부가 달라짐

○ ⑧은 훈령의 제1호서식, ⑨는 제2호서식, ⑩은 제3호서식, ⑭는 제5호서식, ⑮-1은 제6호서식에 의함

○ ⑧의 통지가 없으면 ⑨의 대여신청과 ⑩의 대여를 할 수 없음

###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97. 12. 31.이전	'98. 1. 1.~ '98. 8. 2.	'98. 8. 3.~ '99.11.7	'99. 11.8이후
①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시군동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제4조 제2항)('97.예산부터 적용)</li> <li>- 자부담금 비율이 사업비의 20% 이상이고 금액이 2억원 이상일 때는 착수 시와 진척 50%시에 자부담금을 각각 반액씩 집행</li> <li>- 기타의 경우는 착수 시에 자부담금 전액 집행</li> </ul>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금집행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 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li> <li>○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li> </ul>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 비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②완료사업의 검정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 때 사업집행실적 검정 및 보조금 정산(제13조제4항)	(좌와 같음)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자료에 따라 검정 실시(제4조제7항)	○검정시에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7항)
③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 제외	-	-	-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 제외
③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 사용 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 사용 금액의 비율에 따라 4개의 제재 기준으로 구분함(제16조)</li> <li>- 10억원 이상 50% 이상 : 5년간 지원 안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li> <li>- 5-10억원 미만 30-50%미만 : 3년</li> <li>- 1-5억원 미만 20-30%미만 : 2년</li> <li>- 1억원 미만 20% 미만 : 1년</li> <li>* 2년 이상의 경우 기여도 또는 정황에 따라 개별규정에서 50% 단축 가능</li> <li>*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 중 무거운 것을 적용</li> </ul>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 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li> <li>○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li> </ul>	(좌와 같음)

사 항	'97. 12. 31.이전	'98. 1. 1. ~ '98. 8. 2.	'98. 8. 3. ~ '99.11.7	'99.11.8이후
④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지원대상자의 신청 없이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 월마다 『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⑤대여시기	○배정된 용자한도액을 사업지원과가 『시도→시군→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	○용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⑥대출원장 관리	○용자한도액 잔액 기준으로 관리(관행) -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 해당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대출 지연의 요인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 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좌와 같음)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7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 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⑦용자금 예산의 이월사용	○예산 이월 조치 없이 용자금 예산을 다음 회계년도내에 사용 가능 - 용자한도액 배정이 안된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 말까지 대여가능 - 배정된 용자한도액을 다음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 가능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제5조제1항) ○당해 회계년도 내에 용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대여된 금액은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하여야 함(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 -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98.12.19개정)	(좌와 같음)

사 항	'97. 12. 31.이전	'98. 1. 1.~ '98. 8. 2.	'98. 8. 3.~'99.11.7	'99.11.8이후
⑧대출기한도래전에대출불가능한자도의액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 반납</li> <li>- 반납시 일률적으로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li> <li>-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적용)</li> <li>-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li> </ul>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li> <li>○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을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제8조5항 별지 제4호서식)</li> <li>○반납이자(제8조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적용)</li> <li>-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li> </ul> </li> </ul>
⑨대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계상 년도의 다음 연도 말(용자 종결기한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회계년도 말(제10조제2항)</li> </ul>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⑩대출기한이경과한자도의액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 반납</li> <li>- 대여일부터 반납일까지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1항 별지 제5서식)</li> <li>-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4항 별지 제6호서식)</li> <li>○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2항)</li> <li>-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제10조제3항제1호)</li> <li>-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3항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제10조제1항)('98.12.19개정)</li> <li>○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li> <li>-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li> <li>○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4항)</li> <li>-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1호)</li> <li>-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2호)</li> </ul>	(좌와 같음)



사 항	'97. 12. 31.이전	'98. 1. 1. ~ '98. 8. 2.	'98. 8. 3. ~ '99.11.7	'99.11.8이후
⑪여신관리계좌 운용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등을 확인 받아야 함(제12조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⑫여신관리계좌입금액 중 미지급액 등의 반납	○대출취급기관은 입금일 부터 3월이내에 지급신청이 없는 금액을 사업주관기관의 지급불가능 판단을 받아 반납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좌와 같음)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예산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을 경과한 미지급액 반납('97.예산부터 적용)	○여신관리계좌마감일(예산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 반납(제12조제4항) ※ 반납 명령을 받은 날 또는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각각 11일째되는 날 이후 반납시는 그 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 연체 금리 적용(제12조제5항 및 제7항)	○여신관리계좌마감일(예산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98.12.19개정)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⑬부당사유 대출금의 회수	○반납통지서 접수일부터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 적용	(좌와 같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좌와 같음)
⑭지원실적 의 공개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실적을 사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 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4. 해 설

### < 일 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 가. 정의(제2조)

-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 (2) **지원대상자** :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인등** : 농업인·임업인(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 농·축·삼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 (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림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을 말함

○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촌”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함

(3) **지원** : 용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 예 ] 농특회계(용자 : 농협중앙회 농특사무국), 농지관리기금(농어촌진흥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

[설명] 농림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 자금과”에 해당됨

(6) **사업자금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용자업무 : 협동조합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총무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업경영자금(협동조합과), 축산경영자금(축산정책과)

(7) **사업지원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림부, 청, 농림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축삼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용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융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안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축협 자체자금으로 구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 다. 집행의 원칙(제4조)

-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을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 (4) 융자한도액중 매 분기말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안된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 설명 ]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을 확인할 수 있음(제4조제6항)

[ 설명 ]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서명한 영수증 등으로 가능하도록 인정하였음. 그러나 자기사업에 투입된 자신과 가족의 노동대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입증하기 어렵고 자기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고, 자가노동력으로 상계 처리할 경우 자기자본의 투입 없이 정부지원자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되는 모순이 있어 자가노동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본규정 개정시행(98. 8. 2)이전에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 설명 ]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 설명 ]

농림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이월(제5조)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이월할 수 없으며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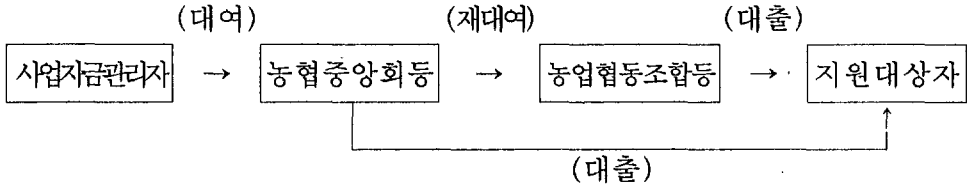
마. 용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용자조건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용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용자의 방법(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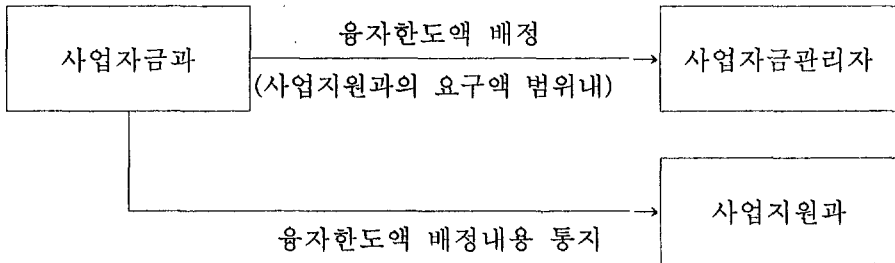
(3) 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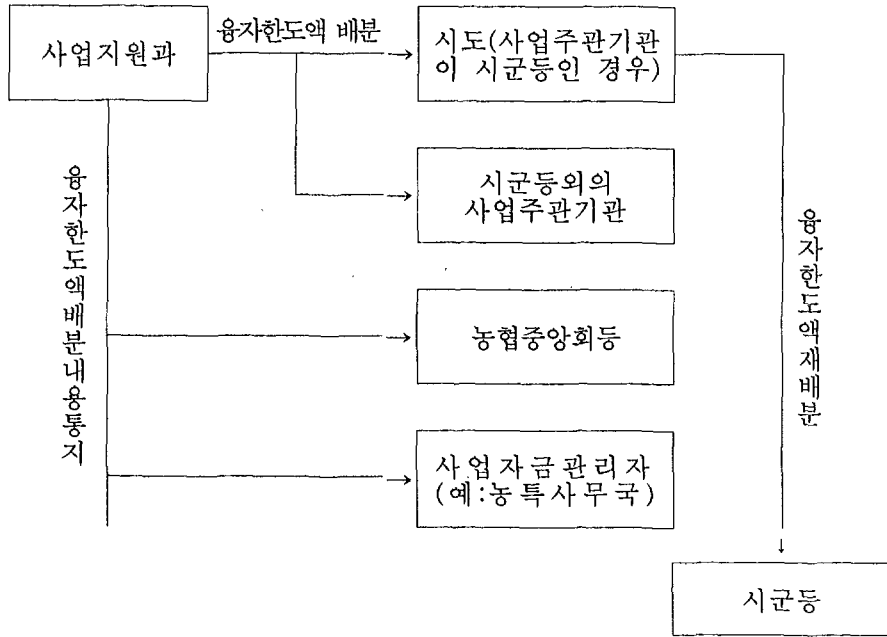
(4) 용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용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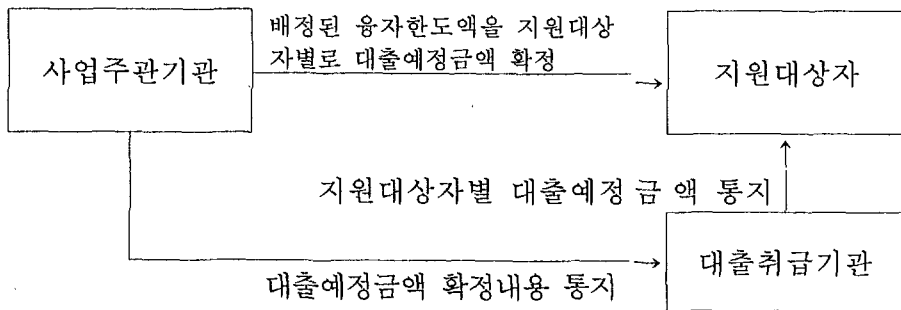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용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용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융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 (2)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함(제8조 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용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용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지원과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자금과에 요청하여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후 대출(제10조제1항)

-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5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 (3)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10.(1.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에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 '96. 7. 31.까지는 『융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융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 『융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융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확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

- \* 특히 '98년부터는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장등이 매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여 부도·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당해금액이 반납되는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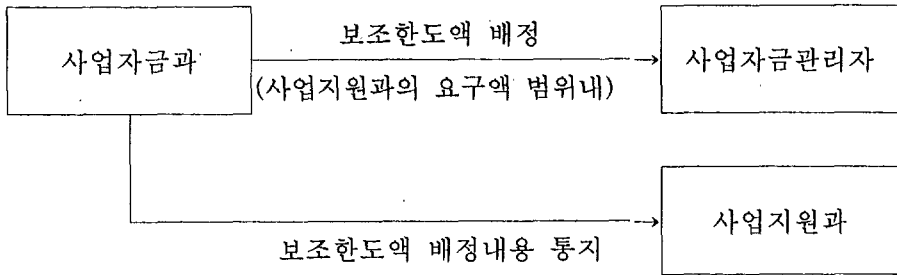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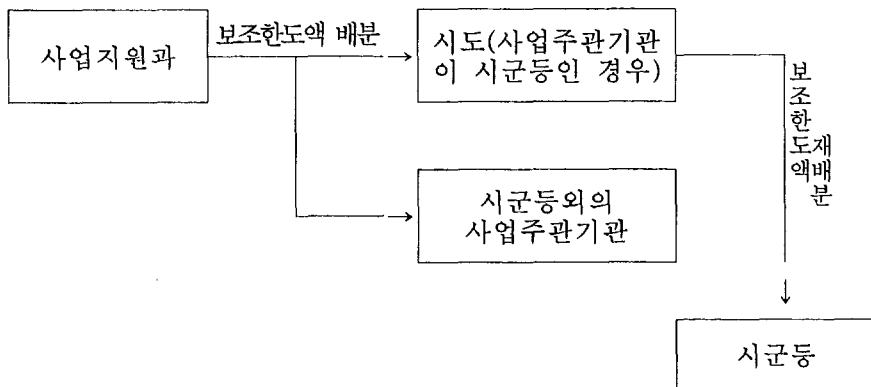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3제1항)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로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대출일부터 적용
  -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제한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부당사용 금액이 <b>10억원</b> 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b>50%</b> 이상인 때	<b>5년</b> (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부당사용 금액이 <b>5억원</b> 이상 <b>10억원</b>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b>30% 이상 50%미만</b> 인 때	<b>3년</b>
③	부당사용 금액이 <b>1억원</b> 이상 <b>5억원</b>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b>20% 이상 30%미만</b> 인 때	<b>2년</b>
④	부당사용 금액이 <b>1억원</b>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b>20%미만</b> 인 때	<b>1년</b>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 파. 보칙(제18조)

- (1) 지방자치단체, 농·축·임·삼협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농지개발조합 및 그 연합회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 Ⅲ. 농림 사업 실시 규정 (농림부 훈령 제1050호)

# 여 백

##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선정과 실시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시행 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 등이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0. 28.>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농림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 다. 농림업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의 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1999. 11. 16)

② 농림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이를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한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개정 1997. 10. 29.>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의2 (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에는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 요령과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안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정하기 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3. 9, 1999. 11. 16 >

③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 및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 농업정보통계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1998. 3. 29>
2. 청의 기획관리관

3. < 삭제 1999. 11. 16 >

4. < 삭제 1999. 11. 16 >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2.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3.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안건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제2호의 위원을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3. 9, 2000. 11. 27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을 위한 경우는 2월, 4월, 7월, 9월의 마지막 주중 각 1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집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5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6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을 두되, 실무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농림부의 국장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의 과의 장과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8. 3. 9, 1999. 11. 16>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 제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5조** < 삭제 1996. 10. 28.>

**제6조** < 삭제 1996. 10. 28.>

## **제2장 자율사업** <개정 1996. 10. 28.>

**제7조 (자금지원계획 및 자율사업 신청요령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요령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개정 1999. 11. 16, 2000. 11. 27>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8조 (자율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농업기반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기관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 12, 1999.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 및 상담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자율사업의 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기술수준, 노동력, 토지 및 생산시설과 영농후계자의 자격요건
4.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부담 능력
5.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6. 선도농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
7. 생산자단체등의 구성방법 및 절차
8.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
9. 자율사업이 잘못될 경우 예상되는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9조 (자율사업의 신청 등)** ① 자율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읍·면동장과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 등의 총괄부서가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12. 1999.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한다.)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0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자율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전 절차)**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개정 1999. 11. 16>
2.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개정 2000. 11. 27>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신설 1997. 10. 29.>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별로 금액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전문개정 1996. 10. 28.]

**제12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개정 1999. 11. 16]

**제13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28. 2000. 11. 27>

**제14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작성 등)** ①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심사하되,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심사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자율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을 확인하여, 성실하게 기록한 신청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성실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자보다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 12.>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신청자에게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이수하지 아니한 자보다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1998. 11.12.>

⑤ 시·군 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8. 11.12.>

⑥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치심의회기구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전문개정 1996. 10. 28.]

**제15조 (시·군 농정심의회 의 공개심 의 등)** ① 시·군 농정심의회는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농정심의회 의 의결로 정하는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12., 1999. 11. 16>

② 시·군 농정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③ 시·군 농정심의회 의 구성원중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2호 및 제3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회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개정 1999. 11. 16>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16>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이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구의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12.>

1.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농림부 또는 청의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정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④ 도 농정심의회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1998. 11.12, 1999. 11. 16>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어야 한다. <개정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1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1. 16>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1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 계획안을 수립하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개정 1997. 10. 29.>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개정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부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제9조제4항에 정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스스로 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12.>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최저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 제3장 공공사업 <개정 1996. 10. 28.>

**제25조 (공공사업의 신청)** ①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이하 “융자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10조에 정한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행기관이 공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사업효과의 확산방안·사업준비상태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융자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동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신청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6조 (공공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예산 반영)**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의 총괄부서가 시군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③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총괄부서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에 반영(국고의 경우 예산청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8. 3. 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7조 <삭제 1997. 10. 29.>

제28조 (준용규정) 제7조, 제8조(제2항제7호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공공사업에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중 “영농후계자의 자격요건”은 “경영능력”으로 하며, 제8조제2항제6호중 “선도농가”는 “우수사업자”로 하고, 제11조중 “제9조제1항 및 제3항”은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준용규정중 “자율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은 “제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

<개정 1996. 10. 28, 1997. 10. 29.>

####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개정 1996. 10. 28.>

제29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농림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경제성
4. 농업인등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대효과
7.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0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분석자료에 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신규사업의 선정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1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개최일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그 사업시행지침을 포함한다.)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확정한다. <개정 1997. 10. 29. 2000.11. 27.>

②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개정 1997. 10. 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27.>

[전문개정 1996. 10. 28.]

**제32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된 날부터 2월이내에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5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제33조** < 삭제 1996. 10. 28. >

**제34조** < 삭제 1996. 10. 28. >

## 제5장 보 칙 <개정 1996. 10. 28.>

**제35조** < 삭제 1996. 10. 28. >

**제36조** < 삭제 1996. 10. 28. >

**제37조** < 삭제 1996. 10. 28. >

**제38조** < 삭제 1996. 10. 28. >

**제39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자대행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용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분기별 1회이상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1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은 지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2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⑥ 농림사업의 계획·집행·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 11.12. 개정 2000.11. 27.>

**제40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제41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8. 11.12.>

##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1996. 10.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 농림사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합 계(70)		(21)	(49)
1. 농업(식량작물) 구조개선(17)	가. 생산기반확충(12)	(5)	(12)
		(2)	(10)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 토양개량사업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료확포장사업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나. 농업기계화(3)	(2)	(1)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농기계생산지원

\*표는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임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다.생산및유통개선(2)	(1)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	(1) 협동조합합병지원
2.농업(원예·축산) 구조개선(21)	가. 생산기반확충(1)	(5)	(16)
	나.사육기반확충(5)	(2)	(3)
	다 원예.생산 및 유통 개선(10)	(3)	(7)
		사료및가지재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 가축계열화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가축개량사업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유통시설지원 농수산물소비지유통 기반확충사업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라.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개선(5)		농축산물자조금 조성지원 채소수급안정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 농산물수출진흥사업 우수농산물수매·유통지원사업 (5)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 시설지원사업 축산물 안전 및 경영안정사업 축산물검사 및 가축방역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4.농촌개발(18)	가.생산및유통개선(3)	(5)	(13)
		(3)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농촌가공산업육성 사업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나.기술개발(3)		(3)
			농림기술개발사업 농촌활력화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
	다.인력육성(3)	(1)	(2)
후계농업인육성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라.소득보전(3)		(3)	
		농업직접지불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	
마.소득원개발(4)	(1)	(3)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공단지육성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마.생활환경개선(2)		(2)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임업및산촌구조 개선(14)		(6)	(8)
	가.경영기반확충(4)	(2)	(2)
		산림경영장비지원 영림계획	사유림협업경영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나.생산및유통개선(4)	(2)	(2)
		임산소득증대 임산물이용가공및합판보드 류시설지원	산림조합육성지원 임산물유통개선지원
	다.인력육성(2)	(1)	(1)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	임업전문인력양성및임업 기술지도
라.산림복지 기능증진 (2)		(2)	
		산림휴양공간조성 산촌종합개발	
마.산림자원조성(2)	(1)	(1)	
	해외조립사업	산림조성	

## 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

### 1. 표준안

####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2001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  
80  
cm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cm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2001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3 : 제41조 관련]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공통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법인

나.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영농조합 법인에 한함)

다.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에 한함)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당해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예 :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한우 고기 전문판매점 등)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나환자촌안의 영농조합법인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법인설립후)

### 2. 사업별 요건(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 3. 사후관리기준

- 가.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서 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농업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할 수 없음
-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는지를 확인 후 정산할 것
- 라.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마.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 사.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과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 자. 사업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 차.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미, 양, 가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 단,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용평가는 시·군 농협(농업분야), 축협(축산분야)에서 실시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의2제1항 관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요령

- 별도의 지침지시없이도 농업인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단위사업의 순서를 대분류별, 중분류별로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의 순서로 적음 (예) 

1	○○○○○○사업 (자율)
---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b>일련 번호</b>	<b>단 위 사 업 명 ( )</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 농림부 ] ○○과 (과장 ○○○, 사무관 ○○○)입니다. [ 0 0 청 ]

### 1. 목적

### 2. 시책 및 추진방향

- \* “6-바”에서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시책방향의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재

### 3. 근거법령(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의 관련조항을 법령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4. 연도별 지원계획

0구 분		'92- 년	년	년	년 (예산안)	년	-2004
사업량							
사 업 비	계	백만원					
	보 조 음 자 지 방 비 자 부 담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년도 사업시행요령(○○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지원시설의 종류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반개조식으로 기재

나. ○○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 용자조건 : 연리 %, 년거치후 년상환

##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 신규사업의 경우 이 지침 시행후 새로이 신청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6의 가 내지 바”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그외의 경우는 < >항목자체를 삭제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명을 기재)

나. 사업담당부서(과단위까지 기재하고 농림부 및 청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병행기재)

- 농림부(또는 ○○청) :
- 시도 :
- 시군자치구 :

다. 자금지원예정자(자율사업의 예와 같이 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이어서 기재할 수 없거나 확정전에 발표하여 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사업비 집행방법,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기재
- \* 대규모 지원시설 또는 첨단시설의 경우 시공사 자격기준, 시설설계, 계약절차, 공사감리, 준공검사 및 대금집행 방법 등의 절차르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 등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에 관한 서식, 사업비에 포함하는 비목의 범위, 검정 및 정산 사무처리절차, 기타 세부 필요사항을 상세하게 기재(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3항 내지 제8항 참조)
-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 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하도록 기재

바. 기타사항

## < 행정사항 >

### 가. 사후관리

\*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정상운영되어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체계 기재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주)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정하되 가능한한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조치 (별지제7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 나. 보고·기타

\* 보고서식은 사무관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수시보고의 심사를 받은 것에 한하며, 서식 위좌측 여백에 지정 또는 심사를 받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6. ○○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년도는 사업예정  
년도의 다음년도를 말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사업신청서  
를 제출할 기관명]

나. 신청자격

- \* 농업인들의 선호가 높아 신청경쟁이 치열하여 탈락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자격요건 강화조건을 반드시 기재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의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1조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맞도록 명시

○ 우선순위

- \* 농림부장관(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이 따로 정하는 전문경영체에 대하여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반면,
- \* 전문 경영체외의 생산자단체 등에게는 농업인등 보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 선정절차

- \* 대형사업 및 첨단시설 설치사업등은 전문적이고 객관성있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표준경영진단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사업성 검토내용 기재

바. 기타사항

-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의2제3항 관련]

2000년도  
농 립 사 업 시 행 지 침 서  
[각권별 제목]

총5권중 제0권

2000. 00. 00.

농 립 부

< 작성요령 >

○ 구성 : 총5권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편성

- 각권의 첫장에 일러두기를 기재(권별 수록내용, 문의기관 등)
- 각권내용의 차례(目次)를 전체권 공통순서로 하여 특정권만으로도 다른권에 수록된 내용목록을 알 수 있도록 함
- 각권의 쪽번호는 제1권부터 시작하여 제5권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함

## 자 율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      ) 번 호      -      )		
	주 소					
자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용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div> <p>○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 1. 현황

영농 규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배 현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설 현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정: ha	m <sup>2</sup>	m <sup>2</sup>	대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m <sup>2</sup>	개소 (     톤)	식	대 (     톤)	m <sup>2</sup>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타 사항									

##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 자단 채등, 회사, 기타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로 표시

### < 작성요령 >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9조제4항 관련]

## 대출신청자료

###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275-00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제1항 관련]

## 사 업 성 검 토 서

###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사업예정지						

###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경력</li> <li>○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li> <li>○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li> <li>○ 영농규모</li> </ul>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적정성</li> <li>○ 사업전망</li> </ul>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이용계획</li> <li>○ 생산 또는 원료조달</li> <li>○ 용수</li> <li>○ 전력</li> </ul>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275-007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3조 관련]

## 신 용 조 사 서

###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 담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275-008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제24조제1항 관련]

## 경 영 장 부

###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m <sup>2</sup>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275-0093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증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의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팽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4년	3년-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물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적용대상자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4년	3년-5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년	6년-10년
농업중 과수	16년	12년-20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8호서식 : 제24조제2항 관련]

##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75-010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부 훈령 제1049호)

여 백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 1996. 6. 13. ]  
훈령 제862호 제정

개정 1996. 8. 8. 훈령 제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 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 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 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 1049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3. “지원”이라 함은 용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 (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1998. 3. 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 10. 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1999.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을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98. 7. 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1998. 7. 23.>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1999. 11. 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 7. 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11. 8>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용자 조건의 결정)** ① 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7조 (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000. 11. 13>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 10. 29, 1999. 11. 8, 2000. 11. 13>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 10. 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 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개정 1999. 11. 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 10. 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7. 23.>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9, 1998. 7. 23, 1999. 11. 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과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자금과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과는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금과는 대여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자금관리과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98. 12. 19.개정>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년도 말(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 12. 19>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98. 12. 19>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 12. 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월 10일(1월 1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8. 12. 19>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1일 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8. 12. 19, 1999. 11. 8>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 10. 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0. 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12조 (여신관리계획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 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 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 10. 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개정 1996. 8. 8, 1997. 10. 29.>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1997. 10. 29, 1998. 3. 9.>
5.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 7. 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 7. 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 7. 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 7. 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1999. 11. 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에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1999. 11. 8>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 7. 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 7. 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 7. 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개정 1998. 7. 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 7. 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 7. 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개정 1998. 7. 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 7. 23.>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 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 10. 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 10. 29.>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 8. 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융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7. 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98회계년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개정 1999. 11 . 8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 11 .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의3제2항 관련]

### (사업자금명) 용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발신 : 사업지원과

접수 확인 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19 . . .	농림부(또는청)○○과	○○○○	○○○
.	사업주관기관(또는시·도)○○과	.	.
.	.	.	.
.	.	.	.

1. 사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 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년 월 일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년 월 일		이 배정 : ③ 천원 (3의 배정일분)
			미 배 정 : ④ 천원
6.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margin-bottom: 5px; height: 20px;"></div>			

(주) ○ ①=②+③+④,      ③=③      **합계 : ③ 천원**

- 사업자금과의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발신 : ○○시도

접수 확인 일 19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 . . . . . . . .	○○시·군·자치구 ○○과	.	.
	.	.	.

1. 사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년 월 일		이번 배정 : ③ 천원 (③의 배정일분)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년 월 일		미 배정 : ④ 천원
6. 시·도·자치구별 재배분일	년 월 일		
7. 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③ 합계 : ③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의3제4항 관련]

##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확인 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1. 사업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년 월 일		이번 배정 : ③ 천원 (3의 배정일분)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년 월 일		
6. 시·도·의 재 배 분 일	년 월 일		미 배 정 : ④ 천원
7. 대출예정금액 확정 일	년 월 일		

8.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	--	--	--

(주) ○ ①=②+③+④, ③=③ 합계 : ③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용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확인 일		소속 및 부서 ○○사군·자치구○○과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피 확 인 자	○○조합 ○○부서	· · · ·

사업명	주 소	성 명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 용자한도액				대출예 정금액 확정일	대출예 정금액 (천원)	대출 불가능한 용자한도액		
				사업 자의 한도 액 배 정 일	사업 자의 한도 액 배 정 일	시·도 의 용 자 한 도 액 배 분 일	시·도 의 용 자 한 도 액 배 분 일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 사 업		김삿갓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 사 업		김개동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용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제1항 관련]

##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용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접수확인 (19. . . .)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	○○조합 ○○부서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업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년 월 일			이미 배정 : ②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년 월 일			이번 배정 : ③ 천원 (*의 배정일분)
6. 시·도·의 재배분일	년 월 일			미 배 정 : ④ 천원
7. 대출예정금액 확정일	년 월 일			
8. 회계년도를 경과한 용자한도액			⑤ 천원	
9. 회계년도를 경과한 용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⑥	
합계 :			⑥ 천원	

- 사업자금과의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통 번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 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19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 (직인)</p>					

275-01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여 백

## V. 농림사업별주요변경사항

여 백

## 2001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주요개선사항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b>1.영농규모화 사업</b>  <농지매매사업> ○ 지원한도 (지대별→ 영농권별)  ○ 지원우선순위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 매입대상농지  ○ 매입가격결정	○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하여 · 평야지 : 10ha · 중간지 : 7ha · 산간지 : 3ha  ② 쌀전업농중 선정 이후 자력에 의한 농지확대 규모가 큰 전업농	○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하여 · 평야지:10ha(20ha) · 중간지:7ha(15ha) · 산간지:3ha(7ha) ( )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법인  ② 영농규모화사업 시· 군계획에 의한 동일영농권 내 쌀전업농   ○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시 지가(당해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기준 -다만,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당해 처분명령을 받은 매수청구자와 매매가격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농지관리 위원회 등의 조정·중 재를 통하여 합의에 의 하여 결정	영농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상한 규정 완화로 건설한 경영체 육성 영농권 중심 사업추진방식의 전환에 따른 조정   일반전업농에게 지원된 농지가 쌀전업농에게 전매·승계되어 쌀 전업농의 육성정책에 부합되도록 유도   매수청구농지 매입에 따른 세부규정 신설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 매입제한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li> <li>○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토지</li> <li>○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류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협의를 합의되지 않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중재가격에 응하지 않은 경우</li> </ul>	농지로서 활용이 불가하거나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
○ 매도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동일 영농권내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li> <li>② 쌀을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영농규모화 사업에서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법인</li> </ul> </li> <li>○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벼외의 다른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거나, 공부상 지목이 답외의 지목인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li> <li>② 쌀을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법인</li> <li>③ 농업경영규모가 3ha 이상인 농업인</li> <li>④ 기타 농업인</li> </ul> </li> </ul>	쌀전업농의 경영규모확대에 기여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lt;농지임대차 사업&gt;</p> <p>○ 지원한도 (지대별→ 영농권별)</p> <p>○ 임대한도</p> <p>○ 임대차 기간</p>	<p>-평야지 : 10ha -중간지 : 7ha -산간지 : 3ha</p> <p>-지대별 지원한도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개별 경영체별로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하여 경영규모 · 쌀전업농 : 10ha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0ha까지</p> <p>○ 5~7년</p>	<p>○ 동 순위에서의 매도순위 ① 연령이 낮은 자 ② 농지의 집단화 정도 ③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④ 경영규모가 큰 자 ⑤ 농과계학교 졸업자 ⑥ 영농경력이 많은자 ※ 기타 지원조건 및 세부 절차는 별도지침에 의함</p> <p>- 평야지 : 20ha(40ha) - 중간지 : 15ha(30ha) - 산간지 : 7ha(15ha) ※ ( )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p> <p>-영농권별 지원한도를 원칙으로 하며 영농권 실정에 따라 개별 경영체별로 농기계보유현황 및 농업노동력 등을 고려하여 경영규모 · 쌀전업농 : 20ha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40ha까지</p> <p>○ 5~10년</p>	<p>영농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상한 규정 완화로 건설한 경영체 육성 영농권 중심 사업추진방식의 전환에 따른 조정</p> <p>영농권별 지원한도 조정에 따라 수정</p> <p>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선택폭 확대를 통한 안정적 영농도모</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lt;농지교환·분합 사업&gt; ○ 채권 확보</p>	<p>-지원액 1,000만원 이하 -지원액 1,000만원 초과</p>	<p>-지원액 1,000만원이하 -지원액 1,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 -지원액 3,000만원초과: 연대보증인 입보 불가</p>	<p>은행권의 보증총액 한도제 준용</p>
<p>&lt;행정사항&gt;</p>			
<p>&lt;사후관리 위반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gt;</p>	<p>○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금이나 농지등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하여 불이익 처분</p>	<p>○ 허위·담합, 기타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은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하여 불이익 처분. 단,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안날로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하여 불이익처분. 단,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2001.1.이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에 대하여 적용. 다만, 지원 당시 계약서 정한 위약금보다 현규정 적용으로 위약금이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부과</p>	<p>위약금 과다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연도에 따라 계약서 정한 위약금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위약금 부과시 형평성 문제 발생</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쌀전업농육성) &lt;사후관리&gt;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p>	<p>○사업취소사유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취업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근무자 등은 제외)</p>	<p>○ -회사..... 경우 (단 농한기를.....취업 농 <u>인을 피선거격요건으로</u> <u>정하고 있는 지역농협,</u> <u>지역축협, 업종별조합</u> <u>등의 조합장, 선거 또는</u> .....제외)</p>	<p>○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장 의 전업농 취소 요건 적용대상 문제 대두 -조합장은 농업인을 피선거격으로 하고 있으며, 재임 및 퇴임후에도 영농 을 계속하는 점 등을 감안  -상임·비상임조합장 을 불문하고 전업농 취소대상에서 제외</p>

과 제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2.토양개량사업</b></p> <p>○시책 및 추진 방향</p> <p>○사업 개요</p> <p>○사업추진계획</p>	<p>○ 행정구역에 의한 들녘중심으로 토양개량제 시용</p> <p>○ 유효규산 부족논과 산성밭이 규산·석회를 공급하여 토양개량</p> <p>○ 폐광산인근등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석회 공급하여 오염 해소</p> <p>( 신 설 )</p>	<p>○주기공급개념 명시(추가)</p> <p>○유효규산 부족논과 산성밭이에 규산·석회를 공급하여 토양개량</p> <p>○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 수립</p> <p>- 읍면장이 토양개량제 공급주기에 의거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수립</p> <p>- 읍면의 비재배 면적과 비 이외의 재배면적을 각각 4등분, 5등분하여 규산과 석회의 연차별 공급대상 지역 선정</p>	<p>○ 경지면적에 의한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근거 마련</p> <p>○ 전 농경지가 공급 대상 지역이므로 별도로 대상지역 명시 불필요</p> <p>경지면적에 의한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근거 마련</p>

과 제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 대상지 선정 및 우선순위</p> <p>○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및 살포 -공급계획 수립 및사업량 배정</p> <p>-보조금 신청 및 지급</p>	<p>○ 대상지 선정 방법</p> <p>○ 2001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의거 시도지사는 시군의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량, 경지면적, 과거 공급 실적 등을 토대로 사업량 배정</p>	<p>(삭 제)</p> <p>○ 2001년 토양개량제 공급 계획에 의거 시도지사는 시군의 경지면적을 토대로 사업량 배정</p> <p>(추가)○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은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후 50%, 나머지 50%는 살포완료 확인후 지급 가능</p>	<p>-공급계획의 토대를 경지면적으로 함</p> <p>○보조금은 살포완료 확인후 지급이 완하거나공급 완료후 50%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살포완료후 지급 가능토록 보완</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4. 발기만정비사업</b></p> <p>○ 계획수립시 유의사항</p>	<p>○ (신 설)</p>	<p>○ 발기만정비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 관리 조직 구성</p> <p>- 농민대표,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가 참여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용</p> <p>-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p> <p>○ 영농기술지도 강화</p> <p>-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 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p> <p>○ 농업용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또는 작물에 대하여는 농업용수 개발을 지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작로 정비 등 필요한 공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p> <p>○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 미터기를 설치</p>	<p>○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p> <p>○ 시설 활용도 제고 및 농업인 소득 증대</p> <p>○ 무분별한 발관정개발 방지</p> <p>○ 수도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업인의 물사용료 부담 등의 문제 제거</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p>	<p>○농업인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수 있음</p> <p>○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여야 함을 수혜민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함</p>	<p>○농업인은 마을회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건의</p> <p>○관정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알리고,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 예정지구로 선정</p> <p>○시도지사는 시장군수기 예정지 답사한 내용중 용수개발계획, 개발 유형,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주민호응도 등을 검토하여 농림부에 사업시행건의</p>	<p>○계획단계부터 전체 농업인의 참여 유도</p> <p>○사업계획 단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고려하고, 사업예정 지구 선정에 철저를 기함</p> <p>○사업예정지구 선정 검토 강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 조사설계</p>	<p>○ (신 설)</p>	<p>○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0ha미만 지구에 대하여 용수 개발계획, 개발유형,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주민호응도 등을 철저히 검토</p> <p>○ 암반관정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 구성</p> <p>○ 조사설계자는 작목 재배 등에 관한 농업 기술센터의 의견 수렴</p> <p>- 시·도지사는 농업 기술센터로 하여금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지도를 실시 조치</p>	<p>○ 시도지사가 기본 조사 실시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50ha 미만 지구에 대하여 용수원개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 강화</p> <p>○ 계획단계부터 유지 관리조직을 구성 토록 유도</p> <p>○ 계획단계부터 고소득 재배작목 검토</p> <p>○ 계획단계부터 농업 기술센터에서 영농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여 받기반 시설물 활용도 제고 및 농업인 소득 증대</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 준공검사</p>	<p>○ (신 설)</p> <p>○ 시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함</p>	<p>○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수혜민으로 하여금 자체 유지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관련 규약을 정하여 시·군에 등록</p> <p>○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며, 시설물 인수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 조치</p> <p>-필요시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의 공사관리자와 동일하지 않은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에게 위탁</p>	<p>○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의식 제고</p> <p>○ 농어촌정비법 제94조(준공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 사후관리</p>	<p>○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노후 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p>	<p>○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 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p> <p>○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p> <p>○ 밭 암반관정개발 지구에 대하여는 소형 관정개발 지양</p> <p>○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p>	<p>○ 관리조직으로하여금 자체규약을만들어 유지관리하므로써 밭관정 활용도 제고 및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 철저</p> <p>○ 시설물 활용도 제고 및 선량한 유지관리</p> <p>○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 및 오염방지</p> <p>○ 농업인 소득증대 등 사업목표 달성</p>

구 분	현 행	변경(2001)	변경사유
<p><b>5. 경지정리사업</b></p> <p>○ 지원기준</p> <p>○ 기타사항</p> <p>○ 환지업무</p>	<p>○ 가을착수대구획경지 정리사업 보조율 : 국고 80, 지방교부금 20%</p> <p>○ 경지정리구역내 소형 관정관리</p> <p>○ 수혜자총회결정사항</p> <p>○ 확정측량 경지정리공사완료후 추진(계약시기 : 4-5월)</p> <p>○ 환지예산과목 305-02(자치단체경상 보조), 보조율 : 국고 보조100%</p>	<p>○ 가을착수대구획경지 정리사업 보조율 : 국고 80, 지방비 20%</p> <p>(신설)</p> <p>○ 경지정리사업구역내 소형관정을 최대한 존치, 활용토록 하고 · 소형관정 폐공시 원상복구요령 신설</p> <p>(신설)</p> <p>○ 수혜자총회결정사항 · 미납환지청산금에 대한 가산금부과 (5/100)여부 · 1,000㎡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지정여부</p> <p>○ 확정측량 : 경지정리사업시행전에 확정측량계약 실시 (계약시기 : 2월 중)</p> <p>○ 환지예산과목변경 412-01(자치단체자본 보조), 보조율 : 국고 보조 80, 지방비20%</p>	<p>○ 2001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름</p> <p>○ 감사원감사(2000.4~6) 지적사항에 따름</p> <p>○ 농어촌정비법령 개정에 따름</p> <p>○ 시행방법 및 시기를 개선하여 다발민원을 해소하고 본환지 업무의 효율성제고</p> <p>○ 2001년도 정부예산 (안)에 따름 (자금집행의 일관성 및 효율성제고)</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6.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b></p> <p>○준공검사</p> <p>○사후관리</p>	<p>○시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함</p> <p>○(신 설)</p>	<p>○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p> <p>○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관리자에게 인계</p> <p>-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당해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하지 않은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p> <p>○사업완료후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등록(변경)</p>	<p>○농어촌정비법 제94조(준공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p> <p>○농어촌정비법의 시설물 등록(변경) 규정을 지침에 반영</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7.배수개선사업</b></p> <p>○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p>	<p>○ 세부설계 실시자는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변경 등이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 및 농림부 장관과 사전협의</p>	<p>○ 다음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 장관과 사전협의</p> <p>-공사비 및 수혜면적의 10%이상 증감</p> <p>-배수장, 배수갑문 규모 및 구조, 배수간선의 단면 및 노선 등 주요사항 변경 등</p>	<p>○ 세부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변경을 억제하고, 계획변경 타당성 사전검토 강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8. 수리시설 개보수사업</p> <p>I. 수리시설 개보수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책및추진 방향</li> </ul> <p>&lt;사업추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지구 선정 - 우선순위</li> <li>○ 기본계획수립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수원공 · 2순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는 안전진단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수립</li> </ul>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화된 주변발도 포함하여 개발</li> </ul>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노후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li> </ul>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시설의 노후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부족한 주변발에 대한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연계 개발하여 사업효율성 제고</li> <li>○ 사업대상을 확대 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근거 추가</li> <li>○ 사업시행체계에 맞게 자구수정</li> <li>○ 사업대상을 확대 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근거 추가</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p> <p>○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p>	<p>○ 시도지사는 <u>사업비 지원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자를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추진함</u></p>	<p>&lt;삭제&gt;</p> <p>○ <u>(추가)사업시행계획 고시에는 매수 및 수용하여야 할 토지등이 있는 경우 토지등의 필지별 조서를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함</u></p>	<p>○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함</p> <p>○ 토지분쟁등이 있을 경우 필지별 고시를 하여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고시의 효력발생</p>
<p>○ 공사감리</p>	<p>○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u>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u></p>	<p>&lt;삭제&gt;</p>	<p>○ 농업기반공사직접 공사감독이므로 불필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II 저수지건설사업</b> &lt;사업추진&gt;</p> <p>○ 대상지선정</p> <p>○ 예정지조사</p> <p>○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 계획수립</p>	<p>○ 사업시행 예정지구 우선순위 결정은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우선 순위 결정</p> <p>○ 시·도지사는 예정지 조사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시급성,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고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신규 사업 지구를 선정</p>	<p>○ 2000년 준설대상지 조사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지구</p> <p>○ 중장기계획에 의한 준설대상지중 시급성과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p> <p>○ (추가)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예정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p> <p>- 기본계획은은 소규모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필요저수량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함</p> <p>○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신규 착수 예정지로 선정</p>	<p>(항목 위치이동)</p> <p>○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p> <p>○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시행사항 누락분 반영</p> <p>- 사업 규모화를 유도하여 효율성 제고</p> <p>○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시행사항 누락분 반영</p> <p>- 사업 규모화를 유도하여 효율성 제고</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 계획 수립	○측량설계비는 수리 시설개보수사업에 준함	○측량설계비는 사업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	○기초치(개발51321-205 : 2000.3.18) 사항 반영
○사업시행 인가 및 공사 발주	○(신 설)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동의서는 동법 제11조 상의 참가자격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첨부	○이해관계인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여 사업추진의 혼선예방 및 원활화
○사업관리	○사업지구는 당년완공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저수율 변동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2개년 완공 계획	○사업은 조기완공 위주로 추진하고, 대규모 지구는 저수율 변동,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적정 사업량 계획	○대규모지구는 연차적계속사업으로 추진가능토록 개정
○시행계획변경	○준설공사중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 골재매각대는 준설사업비에 우선 충당함	○골재매각대는 국고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준설사업비에 재투자하여야함	○준설사업으로 발생된 수익을 준설에 재투자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공사감리		○(추가)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 ----- -----	○준설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기술진에 의하여 용이하게 공사감독 가능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9. 농촌용수 개발사업</b></p> <p><b>I. 대·중규모 용수개발</b></p> <p>○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p> <p>○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p> <p>○ 사업준공 및 검사</p>	<p>○ (신 설)</p> <p>○ 세부설계는 우수한 설계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p> <p>○ 사업시행자는..... 또한 같음</p>	<p>○ '99년도에 수립된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을 참고 하되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후 당해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p> <p>○ 사업시행예정자는 세부 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수 있고 이경우 우수한 ..... 기하여야 함.</p> <p>○ 농어촌정비법 제9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개(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p>	<p>○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내용 보완</p> <p>○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내용 보완</p> <p>○ 농어촌정비법 제 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등 내용 보완</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는 ..... 할수있음</li> <li>○ 준공검사 실시후 ..... 인가를 받음</li> <li>○ (4)기타 자세한 ..... 의하여야 함</li> </ul>	<p>예비검사결과 및 지적 사항 시정내용, 유지 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후 사업준공정산을 함</li> <li>○ 농어촌정비법 제9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정비법 제 규정에 따른 문구 수정등 내용보완</li> <li>○ 농어촌정비법 제 규정에 따른 문구 수정등 내용보완</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II. 지표수 보강개발</b></p> <p>○ 시책 및 추진 방향</p> <p>○ 사업 대상 지구 선정 - 선정기준</p> <p>○ 우선순위</p>	<p>○ 시장·군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있는 농업진흥지역내 수리시설(지하수이용시설 제외)중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속하여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 밖도 개발가능</p>	<p>○ (추가)발용수 확보가 필요한 지역도 포함하여 개발</p> <p>○ -----</p> <p>○ -----</p> <p>○ (추가)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지구 선정</p> <p>○ (추가)농업진흥지역내 수리시설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속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수리시설도 개발가능</p>	<p>○ 인근 발용수 공급 가능지역도 포함개발하여 사업효율성 제고</p> <p>○ 사업대상기준 단순화</p> <p>○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의 수세폐지에 따라 시군관리구역의 농민들이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부담으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 편입을 요망하는 민원해소에 기여</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 세 부 설 계 및 시 행 계 획 수 립</p>	<p>○ 세 부 설 계 자 는 조 사 설 계 과 정 에 서 기 본 계 획 서 의 주 요 사 항 을 변 경 하 여 야 할 경 우 에 는 시 · 도 지 사 와 사 전 협 의 하 되, 기 본 조 사 미 흡 으 로 변 경 될 경 우 기 본 조 사 자 에 대 하 여 는 조 사 비 감 액 등 응 분 의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함</p>	<p>○ 기 본 계 획 에 서 정 한 다 음 사 항 을 변 경 하 여 야 할 경 우 에 는 시 · 도 지 사 및 농 림 부 장 관 과 사 전 협 의 하 여 야 하 며, 기 본 조 사 미 흡 으 로 변 경 될</p> <p>-----</p> <p>-----</p> <p>-----</p> <p>-기 본 계 획 에 서 정 한 공 사 비 및 수 혜 면 적 이 10% 이 상 증 감</p> <p>-저 수 지, 양 수 장, 취 입 보 의 규 모 및 형 식 등 주 요 사 항 변 경 등</p>	<p>○ 세 부 설 계 과 정 에 서 기 본 계 획 변 경 을 억 제 하 고, 계 획 변 경 타 당 성 사 전 점 토 강 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 사유
<p>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I. 농업생산기반정비 ○ 추진체계 - 연도별 사업시행</p>	<p>○ 사업시행자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연도중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p> <p>○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 사업추진경위 2) 사업계획개요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4) 공종별추진물량 및 금액 5) 연도별 수지예산서(재원별) 6) 기타사항</p> <p>○ 투자사업비는 개별사업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작성함</p>	<p>○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p> <p>○ 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대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 사업비 수지예산서의 연도별 내역은 총괄표 및 각 공종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p>	<p>○ 계속사업으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을 공정계획으로 대체함</p> <p>○ 공정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기함</p> <p>○ 사업계획을 변경시 별도 시행계획변경보고(승인)를 하므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불필요하여 생략함</p> <p>○ 자구 수정</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후 20일 이내에 월별 세부공정(工程)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p>	<p>○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정계획에 비해 공시추진이 부진한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 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 공시추진이 부진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p> <p>○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명기함 *보고서식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음</p>
- 시행계획 변경	<p>○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농림부의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함.</p>	<p>○ 총사업비 관리대상지구(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는 계획변경등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p>	<p>○ 총사업비 관리대상지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II. 지하수 개발조사</b></p> <p>○ 시추공 처리</p>	<p>○ 시추조사 실패공</p> <p>- 폐공처리되는 시추공은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 지침 제1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타용도 이용 및 폐공처리 완료시까지 철저히 관리함</p>	<p>○ 시추조사 실패공</p> <p>- 농업기반공사사장은 당해연도 지하수맥조사 및 해수침투조사와 관련하여 굴착한 시추조사공 현황을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 규정의 별지 제20호 서식(지하수개발·이용 시설 관리대장)에 따른 대장을 작성, 당해 시군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도 비치·관리하여야 함</p> <p>-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사장이 제출한 시추조사공 현황 및 실패공의 원상복구결과(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를 비치·관리하여야 함</p>	<p>○ 농업기반공사사장으로 하여금 시추조사공 대장을 지하수법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및 자체적으로 비치·관리토록 함</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11.대단위농업 개발사업 II.서남해안 간척사업</p> <p>○기 타</p>	<p>○사업시행계획변경 시 간 공 사 비 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부장관 이 변경승인</p> <p>○사업 준공검사인가는 시·도지사가 실시 하되 면허관청이 농림부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농림 부장관 명의로 준공 인가필증 교부</p> <p>○농업기반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면허관청인 농림 부가 준공인가</p>	<p>○사업시행계획변경 시 총 공 사 비 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부장관 이 변경승인</p> <p>○ 매 립 면 적 이 3,000ha이상인 경 우는 농림부장관 이 준공인가 시·도 지사가 준공인가 하는 경우는 준공 검사 후 농림부장 관과 협의를 거쳐 준공인가</p>	<p>○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변경</p> <p>○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99.12.31개정) 제29조제10항에 의거 매립면적3000ha미만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권 한위임</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b>12.지역특화사업</b>			
○ 추천사업 분류	○ 지원기준 제시 : 16개 사업 ○ 사업명만 제시 : 9개 사업	○ 지원기준제시 : 10개 세부사업(19개단위 사업) (삭 제)	○ 유사한 세부사업을 통합 하여 재분류 ○ 공모사업으로 추진
○ 사업선정기준	(신 설)	○ 우선선정대상 및 지원 제외 사업 기준 명시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토록 기준을 사전 제시
○ 공모사업 신청 시기	○ 시행년도 2. 15까지	○ 시행년도 1. 15까지	○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기 추진
○ 공모사업신청 한도(도당)	○ 공모사업 총액범위내	○ 공모사업 총액의 1/3범위내	○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신청을 제한
○ 사업 계획 변경	○ (신 설) ○ (신 설)	○ 추천사업 지원 기준 변경시 우리부와 사전협의 ○ 시·도지사는 추천 사업내 세부사업간,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집행 가능	○ 사업계획 변경 절차 명시 ○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추천사업의 세부 사업간 내역 변경을 지자체 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
○ 사업관리	○ (신 설)	○ 불용예상액 사전 보고(10월말)	○ 예산 불용액을 타시·도로 조기 전배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 세부사업별 지원기준</p>	<p>○ 항공방제 - 지원단가 : 22천원/ha</p> <p>○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 - 지원대상 : 무사마귀병</p> <p>○ 지하수개발 (신 설)</p> <p>○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 사업대상지역 : 동일 시군내에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이 5ha이상인 지역</p> <p>○ 마늘종구갱신사업 - 지원대상 : 마늘 주산단지 재배농가 - 지원기준 : (주아)12천 원/kg, (1년 차 인편 및 통마늘)5천원/kg</p>	<p>○ 벼병해충방제 - 항공방제 지원단가 : 25천원/ha</p> <p>○ 채소류 병해충 방제 - 지원대상 : 흑색 썩음균핵병 추가 • 지원단가: 3000천원</p> <p>○ 논농사용 지하수 - 개발실패공은 지하수법령에 따라 원상복구</p> <p>○ 원예용 암반관정 - 사업대상지역 : 염수·한해상습지역의 시설 원예단지 추가</p> <p>○ 중요생산지원 &lt;마늘경쟁력 제고 사업&gt; - 지원대상 : 마늘 주산단지 시장·군수 - 지원단가 : 난지형 420원/kg, 한지형 : 750원/kg * 파종기, 수확기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 가능</p>	<p>○ 명칭변경 및 '97이후 농가 구입 가격지수 증가분 14.5%를 반영</p> <p>○ 명칭변경 및 매년 피해가 확산되는 마늘·양파 병해 방제 추가</p> <p>○ 명칭변경 및 지하수 오염 방지 조항 신설</p> <p>○ 명칭변경 및 염수 등으로 인한 시설원예단지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 대상 추가</p> <p>○ 명칭변경 및 경쟁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종구 갱신 사업 추진방식 변경</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산물 등 우수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li> <li>- 지원계획</li> <li>•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홍보·관측 : 상품안내 홍보물 (이하생략) (신 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지원 생산활용사업</li> <li>- 목재파쇄기</li> <li>•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 지원</li> <li>- 지원내용</li> <li>• 농특산물 홍보·관측 : 상품안내 홍보물(이하 전과 같음), 농특산물 정보화시스템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기반조성 &lt;목재파쇄기 구입지원&gt;</li> <li>-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축산분뇨액비 저장 탱크 설치&gt;</li> <li>○ 지원대상자 : 벼 재배농가 등</li> <li>○ 지원단가 : 15,000천원 /1기</li> <li>○ 대상지역 : 벼20ha 이상 집단재배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세부사업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li> <li>○ 지원대상단체를 명확히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분뇨자원화 촉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추가</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신 설)</p> <p>○개량물꼬지원</p> <p>-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p> <p>-지원대상물꼬 : 농업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성능 등이 인정된 제품</p> <p>-개당지원액 : 8천 원 이내</p> <p>-지원개수 : 1ha당 4~6개</p> <p>○(신 설)</p>	<p>○우리밀 생산지원</p> <p>-지원대상 : 밀재배농가</p> <p>-지원단가: 200천원/h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대:88천원</li> <li>• 비료대:172천원</li> </ul> <p>○ 농기계·자재구입 지원</p> <p>&lt;소규모농자재구입&gt;</p> <p>-지원대상 : 농업인</p> <p>-지원대상 농자재 : 개량물꼬, 논두렁보호설비,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병해충방제 장비</p> <p>-지원단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량물꼬 8천원/개</li> <li>• 논두렁보호설비 : 4천원/m</li> <li>• 등화장치: 50천원/조(부착비포함)</li> <li>• 방제복 : 35천원/세트</li> <li>• 방제모 : 350천원/세트</li> </ul> <p>&lt;병해충 고성능 방제기 구입지원&gt;</p> <p>-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시장·군수</p> <p>-지원규격 (생략)</p> <p>-대당 지원단가 : 145백만원이내</p>	<p>○우리밀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쌀보리수매가와 밀수매가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재대 지원</p> <p>○ 명칭변경 및 농촌인력 부족 해소 등 지원필요성이 높은 자재구입 추가</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16. 미곡 종합처리장</b></p> <p>○지원비율</p> <p>○지원단가</p> <p>○지원대상</p> <p>○시설성격</p>	<p>○ 생산자단체 -국고50%, 용자30% 자부담20%</p> <p>○ 신규RPC -일반 : 8억원</p> <p>○ 위성시설, 창고 개조 시설은 단체에 만 지원</p> <p>○보리처리시설지원가능</p> <p>○(신 설)</p>	<p>○ 생산자단체 - 국고40%, 지방비10%, 용자30%, 자부담 20%</p> <p>○ 신규RPC -일반 : 10억원</p> <p>※ 일반사업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부지구입 가능</p> <p>○ 위성시설, 창고개조시설 일반사업자도 지원</p> <p>○산물보리 처리시설 지원 가능 명문화</p> <p>나) 위성시설 ※위성시설은 가공을 제외한 검사, 건조, 저장가능한 시설으로서 RPC업체가 아니라도 RPC선정기준 을 충족하면 위성시설 설치가 가능(단, RPC 가 없는시·군 등 지역 적으로 RPC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로함) 기존RPC의 원료수집 지역내에서는 기존RPC에 위성시설을 우선지원하고, 위성시설 단독운영 보다는 인근RPC와 연계 운영 되도록 관리</p>	<p>○단체외의 지원격차해소</p> <p>○2000년도 예고</p> <p>○위성시설의 성격 및 우선순위 명시</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설비기준</p>	<p>○1급 양곡창고 개조</p> <p>○ 품질검사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등을 자동화된 기계(도정수율·제현율 자동측정기)로 처리하여 비의 품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p> <p>※도정수율·제현율자동 측정기 : 비의 도정수율 또는 제현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쇄할 수 있는 기계</p> <p>○ 시·군RPC설치 운영협의회</p>	<p>다) 건조·저장시설증설 ※증설시설은 RPC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건조·저장시설이며, 원료 투입구, 조전기 등을 설치 하더라도 동일 작업권내 에는 과잉 투자, 사업추진 혼선을 막기 위하여 증설사업 으로 지원</p> <p>라) 창고개조시설 ※양곡창고 개조시설은 원료 수집경합이 없는 지역에서 창고를 산물벼(보리)처리에 적합한 건조·저장시설로 개조하는 것으로서, 창고 개조의 경제성을 감안 가급적 예비창고 1동(棟) 이상을 확보</p> <p>- 품질검사시스템 : 수분 측정, 계량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p> <p>○ 삭제</p> <p>○ 협의회 구성·기능 추가 - 민간RPC대표 농민대표등포함 - 자체매입가격, 건조료협의 등 포함</p>	<p>○과잉투자 및 사업 추진 혼선방지</p> <p>○창고활용 및 경제성 고려</p> <p>○ 제현율자동 측정 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반영</p> <p>○의견반영</p>

구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 사후관리</p> <p>- 시장·군수는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없는 업체에 대하여 자구 계획서를 제출받아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퇴출조치하고 국고지원금 회수 또는 타업체 인수·합병조치(타업체에 인수·합병된 이후 재가동시는 RPC로 재인정)</p> <p>○ 교정검사 및 시설능력조사</p>	<p>○ 시장·군수는 부도RPC 발생시 자구 및 합병·제3자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회생 토록 적극 노력하고, 정상 가동시 RPC로 재인정.</p> <p>- 다만, 기존RPC가 부도로 운영중지중인 상태에서 같은지역(원료권)에 신규로 RPC를 설치코자하거나 자체조성RPC중에서 정책지원대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투자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즉시 보고</p> <p>○ 시장·군수는 산물수매전에 RPC(위성시설포함) 호퍼스케일(수분·중량)에 대한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시설변경이 있을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농관원 출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조사</p> <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말 기준,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조사하여 통보·보고하여야함(농관원출장소→시·군 지원→시·도 본원→농림부)</p>	<p>○ 업체부도시 처리지침을 명시하여 산·설치 등과의 마찰을 줄임</p> <p>○ 측정기기의 교정검사 대농업인신뢰제고</p> <p>○ 시설능력조사를 정례화함</p>



구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운영자금	<p>○ 부실업체 제재 ※ 별표1) 자체 조성 RPC 뒷편에 부실업체 제제사항이 들어있음</p> <p>○ 지원절차 및 방법</p>	<p>○ 산물벼처리실적이 적은업체, 사고업체 등 부실경영체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축소 내지 중단</p> <p>① RPC 자체매입량(A)이 정부 산물수매 배정량(B)보다 적은업체</p> <p>② 검사시설·장비미비 및 교정검사 미필, 자체검사원 미 확보 업체</p> <p>③ RPC 자체매입금액(C)이 운영자금지원액의 1.5배(D) 미만인 업체</p> <p>④ 미곡유통관련 불법·부정업체 또는 산물수매벼를 임의로 처분한 업체</p> <p>⑤ 운영실적이 1년이상 없는 업체 또는 부도업체</p> <p>○ RPC별 운영자금 신청접수 (1. 30까지) - 별도 시달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등을 통하여 일괄신청</p> <p>○ RPC별 운영자금 지원계획 대출기관에 통보(농림부)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농협 시·군지부 정책대부계)</p> <p>○ 대출기간 : 2001. 12. 31까지 (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조치)</p> <p>○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함</p>	<p>○ 사후관리 강화 및 지침체계정리</p> <p>○ ②항추가</p>

구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운영자금	○보고 등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 요구 및 운영자금 집행실적 제출</li> <li>-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발생시 수시보고</li> <li>○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 요구 및 운영자금 집행실적 제출</li> <li>○ 사업자는 원료벼의 매입·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li> <li>-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의 기록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li> <li>○ 사업자는 농관원출장소장의 원료벼 매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원료벼매입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li> <li>○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년말을 기준하여 원료벼 매입실적을 1월 30까지 농림부보고</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18.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b></p> <p>○ 우선지원</p> <p>○ 선정절차</p>	<p>○ (신설)</p> <p>○ 사업신청시 종자 업체는(사)한국종자 협의회장, 개인육종가는 농촌진흥청장의 추천서를 첨부</p>	<p>○ 조생양파, 방울토마토, 당근, 시금치 등의 채소종자와 화훼종자 품종개발</p> <p>○ 폐지</p>	<p>○ 조생양파 등 4개 품목은 채소종자 전체 수입액의 76%를 점유하고, 화훼종자의 수입액은 15백만 \$로 수입의존도가 높음('99기준)</p> <p>○ 제46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첨부서류를 감축 대상으로 분류(행정 05090-86, '00.2.29)</p> <p>- 현행추천 방식은 사업신청자에게 부담을 주게 되며 사업타당성은 자치단체를 거쳐 우리부에서 검토하게 됨</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19.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b> <b>I.조사료생산 기반확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li> <li>○ 지원규모</li> <li>○ 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료물류유통기 지지원사업 -물류창고, 저온 저장고, 부대시설 등</li> <li>○ 개별농가 : 5억원이내 ○ 법인·축협·공공 기관 : 자기자본의 200~400%이내</li> <li>○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 제한 및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할 것 -계약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군 관계관 입회 및 청약자· 낙찰자 공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간이세금 계산서로 대체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는 시공자 (공급자)가 책임 진다는 각서를 징구토록 할 것</li> </ul>	<p>&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농가 : 5억원 이내</li> <li>○ 법인·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200~ 400%이내</li> <li>○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조사료의 자급화, 수입조사료의 농가직송, 물류비용증가 등으로 경제성이 없어 사업 신청이 없는 실정임</li> <li>○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삭제</li> <li>○ 세부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대한 관련 조항을 명시</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우선 순위</li> <li>- 농가</li> <li>- 협업체·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li> <li>○ 세부사업내용</li> <li>- 기성초지 보완</li> <li>- 기타 조사료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li> <li>○ 세부사업별 지원기준</li> <li>- 영구목책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만을 단독으로 신청한 자</li> <li>○ (신설)</li> <li>○ 하급초지에 한하여 지원</li> <li>- 농기계보관창고(50평이내)</li> <li>- ha당 3백만원</li> <li>○ 지원단가는 상한액이며 그 이상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삭제 &gt;</li> <li>○ 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하는 조합</li> <li>○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 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li> <li>- 농기계·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li> <li>- 1km당 9백만원</li> <li>○ 세부항목별 단가는 지역실적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 시장·군수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li> <li>- 단, 초지조성·보완은 별도 고시하는 초지 조성 비용이하로, 종자·비료 및 벚짚 등 암모니아처리농협중앙회 공급가격(실소요액)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만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자에게 우선 순위 부여 불필요</li> <li>○ 집유일원화와 연계</li> <li>○ 중급초지도 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토록 함</li> <li>○ 조사료 보관창고도 지원 가능토록 함</li> <li>- 단위조정</li> <li>○ 사업단가이상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하에 지원 가능토록 함</li> <li>- 기종·규모 등에 따라 단가보다 실소요액이 높아질 수 있음</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b>II. 사료제조시설 및 원료구입</b> ○ 사후관리	○ 기반시설 지원비율 -용자70% 자부담30%  ○ 한국사료협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함 (타용도로 사용시 지원자금 회수 등의 조치)	-용자80%, 자부담20%  ○ 농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함 (타용도로 사용시 지원자금 회수 등의 조치)	-용자지원비율 조정  ○ 농협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사후관리자 변경
<b>III.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b> ○ 자금집행과 정산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건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여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 서류 비치 ○ 지원대상사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에 포함 불가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을 준용	○ 세부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대한 관련조항을 명시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b>20.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b> ○사업대상자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3.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 기계설비 보완대상농가  ○(추가)  ○(추가)	○ . . . . . 1995.12월말 . . . . . . . . . . . . . . . . . .  ○ 축산분뇨액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한국유기질 비료협동조합회원  ○『오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 폐수의 수집·운반 영업 허가를 받은 액비전문처리업체	○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장비는 부식 등으로 인한 내구연한이 짧아 방치 할 경우 가동이 중단되고, 앞으로 신규시설보다는 보완시설 위주의 농가 희망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액비로 사용하는 농가, 한국유기질 비료협동 조합회원과 축산농가 연계하여 축산분뇨를 축분퇴비로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추가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축분액비로 원활히 자원화하기 위 하여 지원대상자 추가
<b>21.가축 계열화 사업</b> ○사업내용설명 -대상축종 ○우선순위  ○신청자격	○ 돼지·닭  ○ 수출을 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계열주체	○ 돼지  ○ 생산물을 수출 하고자 하는 자 ○ 수출업체와 연계한 계열주체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한 계열업체	○ 2001년도 계열화사업은 돼지만 시행 ○ 우선순위에 신규삽입 -계열화업체의 수출유도 ○ 신청자격에 LPC 및 LPC와 연계된 업체 포함

구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b>22. 송아지생산안정제</b>			
○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	○ 두당 900천원	○ 두당 1,000천원	○ 한우사육 기반유지를 위한 지원시책 강화
○ 송아지생산안정 제지급한도액	○ 두당 200천원	○ 두당 250천원	
<한우다산장려금>			
○ 한우다산장려금 지급금액	○ 두당 - 3산-4산 : 100천원 - 5산이상 : 200천원	○ 두당 - 3산-4산 : 200천원 - 5산이상 : 300천원	○ 한우사육 기반유지를 위한 지원시책 강화
○ 농가홍보		○ 농가가 인공수정 증명서 보관토록 홍보	○ 2002년부터는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송아지에 지급 홍보
<한우거세장려금>			
○ 한우거세장려금 지급금액	○ 두당 100천원 - 축발기금 100%	○ 두당 200천원 - 축발기금 70% - 지방비 30% ※ 당초 축발기금 50% 지방비 50%	○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원시책 강화
○ 지역별 한우사업 추진 협의회 명칭	○ 한우사업추진 협의회	○ 한우산업발전 협의회	○ 협의회 협의내용 범위확대 - 지역 한우산업 전반에 걸쳐 협의



구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세확인방법</li> <li>○ 자조금 사업추진</li> <li>○ 지급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신설)</li>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공무원 입회확인</li> <li>○거세소 귀 절취</li> <li>○자조금사업참여노력</li> <li>○2002년부터 안정제 사업참여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만 거세장려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세확인 철저</li> <li>○자율적인 자조금 사업실시 권장</li> <li>○2002년도 안정제사업 참여 철저</li> </ul>
<우수축생산포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칭 변경</li> <li>○지급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축출하 포상금</li> <li>○ 국내산 소(수소 및 거세우)의 등급판정결과 A1<sup>+</sup>, A1, B1<sup>+</sup>, B1으로 판정된 소를 출하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축생산포상금</li> <li>○ 거세한우를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 출하 하여 A1<sup>+</sup>, A1, B1<sup>+</sup>, B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li> <li>※ 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로 부터 우수축 생산자 시행 협조 단체로 지정받은 단체</li> <li>- 지역축협·농협</li> <li>- 한우거세사업 실시 요령에 의한 한우거세 사업시행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 단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수소 거세를 통한 품질고급화와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지역단위의 한우산업추진체 육성</li> <li>○ 농가위주의 포상금지급</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23.가축개량사업</b>  <b>&lt;한우개량농가 육성&gt;</b></p> <p><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개량농가 지정</li> </ul> <p><input type="checkbox"/> 관리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조합</li> </ul> <p><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조사레비</li> </ul> <p><input type="checkbox"/> 사업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개량농가 육성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우 3두미만 보유 농가는 개량농가에서 제외 단, 고등등록우는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관리 가능</li> <li>○ 개량농가중 소규모 사육농가는 연차별 관리대에서 제외. 단, 고등등록우는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관리두수에 포함</li> <li>○ 지역조합</li> <li>○ 기초35천원, 혈통50천원, 고등70 -송아지생산신고시 계획 교배 등을 확인하여 사료지급</li> <li>○ 축협중앙회장이 사업비 집행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대상제외방안은 별도시달 - 단, 고등등록우는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관리 가능</li> <li>○ 지역축협·전국한우협회 -관리조합이 없는 지역은 인접지역 축협 또는 전국한우협회에 사업 참여 신청 가능</li> <li>○ 기초35천원, 혈통60천원, 고등80천원 -송아지생산신고시 1차 지급(사료) -송아지3-4개월령에 자가사육판매의향 신고시 2차지급(현금)</li> <li>○ 관리조합(전국한우협회 포함)이 한우개량농가육성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심의확정후 추진 -전국한우협회는 한우개량부 심의를 거쳐 시행</li> <li>○ 관리조합은 연간2회(6월, 12월) 시·군 관련 공무원과 합동으로 한우개량농가 육성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익년도 한우개량농가 육성계획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사육두수감소</li> <li>○ 농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관리조합 확대</li> <li>○ 생산송아지 이동관리 및 비육농가연계 판매 추진</li> <li>○ 시·군의 한우개량사업참여 확대와 사업평가보완체계 개선</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 data-bbox="175 328 378 407">&lt;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gt;</p> <p data-bbox="161 417 385 526"><input type="checkbox"/> 보증종모우생산을 위한 당대·후대 검정</p> <p data-bbox="161 1123 385 1202"><input type="checkbox"/> 육질개량을 위한 신기술 도입</p> <p data-bbox="161 1341 385 1461"><input type="checkbox"/> 도축장 출하 바코드 귀표출현우 도체성적 조사</p>	<p data-bbox="399 417 700 566">○ 검정소검정(Stationtest)으로 당대검정(500두)와 후대검정(600두) 실시</p>	<p data-bbox="716 417 1029 606">○ 검정소 검정(Stationtest)을 통한 당대검정(500두) 후대검정(600두)외에 현장후대검정(Field test) 체계도입</p> <p data-bbox="716 606 1029 725">- 현장후대검정두수 : 후보종모우 자손(↑) 2,400두</p> <p data-bbox="716 725 1029 805">○ 현장후대검정참여 사례비 지급</p> <p data-bbox="716 805 1029 1103">- 2001년도에 후보종모우 자손 수송아지를 현장 후대검정비육농가에 연계하여 판매한 번식 농가의 현장후대검정 참여 사례비는 2002년도에 소급지원 계획</p> <p data-bbox="716 1123 1029 1202">○ 한우생체단층촬영 (5,000두)</p> <p data-bbox="716 1202 1029 1282">○ DNA-Marker분석 (2,000두)</p> <p data-bbox="716 1341 1029 1500">○ 바코드귀표 부착우가 도축될 경우 도체성적을 조사하여 개량자료로 활용</p> <p data-bbox="716 1500 1029 1620">- 조사두수 : 140천두 - 조사두당 700원을 해당 도축장에 지급</p>	<p data-bbox="1047 417 1225 646">○ 현장후대검정 통한 검정두수 확대로 육질 개량 촉진과 유전능력 신뢰도 제고</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돼지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검정 비용 일부 지원</li> <li>○ 전문종돈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소 검정 및 농장 입회검정 검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당 3,200원</li> </ul> </li> <li>○ 농장자가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당 2,300원</li> </ul> </li> <li>○ 전문종돈업육성 중장기 계획에의거 신규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지침 삭제</li> </ul> </li> </ul>	
<경주마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마를 사육하는 농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마(제주마 포함)를 사육하는 농가</li> </ul>	<p>제주도의 경우 제주마 경주를 시행하고 있어 경주마에 포함</p>
<p><b>24.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b> <b>I. 농산물 물류 표준화</b> ○ 대상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구입비, 선과기 등 포장화 부대시설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마늘줄기절단기, 비파괴당도 측정기구입비 선과기 등 포장화 부대시설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규격 표준화와 함께 등급 규격 표준화의 필요성 대두로 등급 표준화를 위한 기지지원추가</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대상 순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 파 괴 당 도 측 정 기 우선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농산물 과 차별화를 위한품질내부 등급화 기기 우선 지원</li> </ul>
<p><b>II. 물류기기 공공이용촉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일 기준으로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에 임대료 지원</li> <li>○ 산지에서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유통점 등 소비지 이동의 경우 임대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일시적 저장후(90일 이내) 출하하는 경우도 지원</li> <li>○ (추가)산지에서 APC등 농산물종합처리장으로 이동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유통특성을 인정</li> <li>○ 수확에서 부터 소비지까지 일관 수송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풀 이용 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의 중복</li> <li>- 도매시장, 유통사업장 및 풀회사의 기기관리 중복</li> <li>○ 풀이용에 따른 관리서류 중복 및 복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회사에서 회수관리를 책임 지며</li> <li>- 도매시장 등에서는 풀회사에 회수관리에 협조</li> <li>○ 신청, 회수관리 기기불출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고 이에 따른 관리서류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 이용기기 관리 책임소재 명확화</li> </ul>

구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사업내용	○포장화미흡품목 포장재 지원 -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등 9개품목 - 지원대상 : 생산자조직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포장화 미흡품목 포장재지원 - 대상품목 중 무,배추, 마늘을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으로 지원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대상품목 · 공동계산조직출하품목 · 친환경농산물표시사용 신고품목 · 품질인증 품목 - 지원대상 · 규격출하공동계산조직 · 친환경농산물표시사용 신고조직 · 품질인증 받은 생산자조직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 지원대상 : 공영도매 시장, 종합유통센터에 표준규격품 출하자	○농산물의 품목간 특성에 따라 포장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포장재 지원시책을 특성에 따라 구분
○사업단가	○포장화 미흡품목 포장재 용적별 최고사업단가 - 740원/매(40,000cm <sup>3</sup> 미만) ~1,000원/매(60,000cm <sup>3</sup> 초과)	○포장화 미흡품목 포장재 용적별 최고사업단가 - 850원/매(40,000cm <sup>3</sup> 미만) ~1,100원/매(60,000cm <sup>3</sup> 미만)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사업단가 - 포장화 미흡품목에 따름 ○도매시장포장화우대품목 사업단가 - 포장화 미흡품목방법에 따르되 출하비용 일부 부담 (추가)	○사업단가의 현실화

구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b>Ⅲ. 농산물 규격출하</b>  ○ 지원사업량	○ 포장화미흡품목 생산자 조직등급분류 및 지원사업량				○ 포장화미흡품목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사업량				○ 생산자 조직의 규격포장 출하 적극 참여유도
	구분	최우수 조직	우수 조직	일반 조직	구분	최우수 조직	우수 조직	일반 조직	
	평가 점수	9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평가 점수	9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 사업량	신청량의 90% 이상	신청량의 80-60% 이상	신청량의 30% 이하	지원 사업량	신청량의 100%	신청량의 90-70%	신청량의 30% 이하	
<b>25. 농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사업</b>  <b>I. 산지농협 유통활성화</b>  ○ 시책방향	○ 유통사업이 활성화되고 건설한 조합에 유통종합자금 지원				○ 합병조합품목조합 등 대규모 사업조합에 집중지원				○ 산지농협을 농산물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유통개혁 의지 부각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신청자격</p> <p>○지원대상조합 선정심사기준</p> <p>○지원액 산출기준</p> <p>○평가에 의한 賞罰 실시</p>	<p>○多數少額</p> <p>○(신설)</p> <p>○농협중앙회와 협동조합유통활성화지원위원회가 중복 심사(업무중복)</p> <p>○제한 없이 신청 받은 후 내부기준에 따라 조정(10~60억원)</p> <p>○평가 및 賞罰원칙 선언</p>	<p>○少數多額(2000년 지원자에 대한추가지원 포함)</p> <p>○유통사업실적 50억원 이상조합 - 연합사업조합 및 소수품목 중심으로 고도의 전문화가 진행된 조합은 20억원</p> <p>○농협중앙회가 실적중심의 계량적 심사를 한 후(85%)</p> <p>○지원위원회가 발전가능성 중심의 비계량적 심사(15%)를 하여 종합조정</p> <p>○합병조합·품목조합 등 광역조합, 연합사업조합, 산지유통센터운영조합, 공동규격출하조합, 자조금 또는 유통명령제 시행조합 등에 선정의 우선권 부여</p> <p>○신청액 산출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신청자 스스로 지원액 산출(산출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조정을 하지 않음)</p> <p>○지원액 하한을 폐지하고 상한을 현행대로 60억원을 유지하되 - 광역조합, 연합사업조합, 산지유통센터운영조합, 공동규격출하조합, 자조금 또는 유통명령제 시행조합 등에는 90억원 까지 지원</p> <p>○2000년 지원조합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賞罰 실시 - 상위 10% 조합에는 인센티브(추가자금) 지원 - 하위 10% 조합으로부터는 지원액의 10~20% 회수</p>	<p>○규모화된 조합중심으로 유통개혁 목표 조기달성 도모</p> <p>○지원원칙에 충실</p> <p>○지원위원회의 비계량적 심사 강화 및 업무 간소화</p> <p>○지원원칙에 충실</p> <p>○자금의 우선지원으로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 도모</p> <p>○책임경영체제 구축</p>



구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b>II.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b>  ○사업대상품목	○주산지화·전문화 가능품목 (채소수급안정사업대상품목 제외)으로서 조합(영농조합법인)당 3개 품목이내	○ 주산지화·전문화 가능품목 (채소수급안정사업대상품목 제외)으로서 조합(영농조합법인)당 3개 품목이내 ○ 품목별 전국협의회 가입품목에 대하여 총 사업의 80% 이상을 사용(추가)	○ 품목 전문화를 위해 결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가입 취지에 맞게 품목 사업량 목표 설정
<b>III. 공동규격 출하촉진</b>  ○사업대상품목	○ 무, 배추, 당근, 토마토, 오이 등 (13개 품목)	○ 가지 추가(14개 품목)	○ 채소수급안정사업의 시설채소 추가 계획 반영
<b>26. 농산물산지 유통기반확충사업</b> <b>1.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설치</b>  ○시책방향	○산지유통센터설치, 집하장보완, 저온유통기반확충 사업으로 세분화 ○(신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으로 일원화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先 운영자 확정” “後 지원결정” ○기존시설의 확장은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에 지원원칙	○지원의 효율성 제고  ○운영의 내실화 유도  ○과잉투자 억제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지 원 내 용	○(신 설)	○ 신청주의에 의한 예산 반영 - 신청후 포기시 1년간 신청자격 제한 - 대상자 선정 후 포기시 3년간 지원자격 제한	○ 사전 충분한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을 유도 하고, 책임성 강화
	○(신 설)	○ 시·군별 배치계획에 의한 定數 엄격적용 - 시·군별 정수 범위 내 사업신청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시·군간 정수조정 후 지원	○ 지역별 편중 방지
	○(신 설)	○ 산지유통센터의 핵심시설인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 저장고의 최소규모를 각각 100평 이상으로 함 - 소규모 개별시설은 농업 경영종합자금에서 지원	○ 산지유통센터의 규모화 유도
	○ 저온유통시설 일괄 지원 원칙 선언	○ 예냉·냉장수송 일괄지원의 선택 적용 - 하절기 수확품목은 일괄 지원 권장 - 한냉기 수확품목은 선택	○ 저온유통 원칙은 유지하되, 품목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시설설치유도
	○(신 설)	○ 간마늘시설 신청자에 평가상 가점부여	○ 간마늘 유통기반 확충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신 설)	○ 보조금과 지방교부금간 상호융통 근거 마련	○ 지원비율을 달리하는 사업자 부류간 신축적인 예산 운용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II.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지원</b></p> <p>○ 지원대상자 범위</p> <p>○ 지원액 규모</p> <p>○ 평가 기준</p>	<p>○ (신 설)</p> <p>○ (신 설)</p> <p>○ 운영실적 50%, 운영규모 50%의 가중치로 평가</p>	<p>○ 종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규자는 18점 만점에 8점 미만자를 제외</p> <p>○ 전년도 배정액의 50% 이하를 대출 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2001년 지원액을 전년도 대출액 이하로 책정</p> <p>○ 종합평가 결과 상위 10% 이내의 자에게 기본지원액의 50% 해당액을 인센티브로 추가지원</p> <p>○ 깎마늘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확대 (일반 지원자의 150%)</p> <p>○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하는 경우는 기본지원액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직거래 실적의 100% 해당액을 추가지원</p> <p>○ 운영실적 80%, 운영규모 20%의 가중치로 평가</p>	<p>○ 경쟁동기 유발 및 나눠먹기식 지원 지양</p> <p>○ 무분별한 신청을 사전에 억제하여 자금의 효율성 제고</p> <p>○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게 하여 활성화 도모</p> <p>○ 깎마늘 유통체제 구축</p> <p>○ 직거래 확대유도</p> <p>○ 규모보다는 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경쟁동기 유발</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b>27.농수산물도매 시장 및 유통 시설 보완지원</b> <b>I.농수산물 도매 시장건설</b> ○시책 및 추진 방향 ○사업비 내용	○건설목표 : 2001년 까지 32개소 건설 ○사업량 : 8개소, 사업비 : 국고보조 30,078백만원	○건설목표 2002년까 지 32개소 건설 ○사업량 : 4개소, 사업비 : 국고보조 32,359백만원 * 서남권도매시장 부지 추가매입비 15,797 백만원 포함	○서남권도매시장 총 사업비 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서울서남권, 광주, 포항, 마산도매시장 4개소 지원
<b>III.농산물유통 시설보완</b> ○지원기준 및 조건	○도매시장시설보완 : 국고보조70,지방비 30%	○도매시장 시설보완 : 국고보조60,지방비 40%	○2001예산(안)검토시 기획예산처에서 국고 보조율 하향 조정
<b>28.농수산물 소비지 유통 기반확충사업</b> <b>I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건설</b> ○지원기준 및 조건 ○사업비 내용	○생산자단체 -부지 50%국고융자 -건설비 50%국고보조 ○사업량 : 9개소, 예산 : 84,447백만원	○생산자단체 -부지 50%국고융자 -건설비 70%국고보조 ○사업량 : 6개소, 예산 : 31,270백만원	○다른 지역과의 형 평성을 감안 2001 예산(안)에 조정반영, 기획예산처와 협의완료 ○대전, 대구, 목포, 수원, 김해, 금산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b>Ⅲ 농산물 직거래 시설 지원</b>			
○ 지원대상	○ 직거래장터 : 지자체 - 신청자격 : 인구 20만 이상도시	○ 직거래장터 : 지자체 - 신청자격 : 제한없음(읍면지역까지 확대)	○ 부지문제 해소와 농업인의 직거래 참여욕구 충족 * '00년중 기초치
○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 고정식 시설형장터(200평)	○ 직거래장터 : 고정식 시설형장터 및 이동식 천막형장터	○ 위와 같음
○ 지원시설	○ 직거래장터 : 기반장비, 판매시설 및 장비 등  ○ 파머스마켓 : 농산물 직판장, 부대시설 - 농업인코너 : 50% - 농산물판매장 : 70%	○ 직거래장터 - 고정식 : 현행과 같음 - 이동식 : 천막 및 판매대  ○ 파머스마켓 - 농업인코너 : (1년)30% → (2년)40 → (3년) 50% - 농산물판매장 : 시 지역 70%, 읍이하 지역 60%	○ 출하작목 및 조직 육성기간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00년중 기초치
○ 사업비(국고 지원)	○ 직거래장터 : 1,400백만원  ○ 파머스마켓 : 8,960백만원(보조6,400, 융자 2,560)	○ 직거래장터 : 1,540백만원  ○ 파머스마켓 : 11,200백만원(보조8,000, 융자 3,200) - 사업단가 : 2,000천원/평 → 2,500천원	○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 완화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b>29. 농 축 산 물</b>			
<b>자조금조성지원</b>			
○시 책 방 향	○(신 설)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화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면 이에 대응하여 50~100%의 보조금 지급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지원대상품목의 범위	○(신 설)	○주산지화가 많이 진행된 품목 중심으로 20개 고시	○적용이 용이한 품목부터 시작
○지원대상자의 범위	○(신 설)	○협동조합, 법인경영체(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사단법인 중 - 전국 생산액 대비 단체 출하액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단체	○품목별 전국 1-2개 단체를 집중지원하여 시장교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
○보 조 금 지급 기준	○(신 설)	○자조금 조성액의 50%를 기본으로 하여 최고 100%까지 지급 - 납입인원이 구성원의 70% 미만이면 40%, 80% 미만이면 56%, 90% 미만이면 68%, 90% 이상이면 80%를 지급하고 - 전년도조성액 중 90% 미만 사용시는 10%, 90% 이상 사용시는 20%를 지급함 - 따라서 위 2개 요소를 조합하면 50-100%를 지급하게 됨	○무임승차 및 기금화 방지
○자조금의 용도	○(신 설)	○ 소비촉진 홍보(방송·신문 광고, 전단 제작·배포, 시식회 등 이벤트 행사) ○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 ○ 품질향상·수급조절을 위한 구성원 교육 ○ 유통협약 또는 유통 명령 이행 경비 ○ 유통정보 제공 및 구성원간 유통정보화, 관측조사, 기술 및 공동상표의 개발 연구 ○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	○생산자 자율에 의한 유통문제 해결 유도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35. 축산물품질 향상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I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b></p> <p>○ 신청자격</p> <p>○ 지원절차</p> <p>○ 신청구비 서류</p> <p>○ 지원내용</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 기존도축장 3년이상 영업 경험 있는 자</p> <p>○ 축발기금 용자에 결격 사유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제외</p> <p>○ 기존 도축장 3개이상 통합시 지원</p> <p>○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시·도 경유하여 2월말 까지 제출</p> <p>○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 선정</p> <p>○ ①사업계획서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③사업자 등록증사본④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영업허가증 사본 등)⑤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등 ⑥사업 신청자 공증각서⑦기타 관련서류</p> <p>○ 지원용도 : 소·돼지도 축시설 및 오·폐수처리 시설</p> <p>○ 사업비 : 12,500 백만원 (축발기금 용자 8,750, 자부담 3,750)</p>	<p>○ 신규사업</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II.가공·판매 시설</b></p> <p>&lt;한우고기 전문판매점&gt;</p> <p>○사업대상자</p> <p>○우선순위</p> <p>&lt;브랜드업체 운영자금지원&gt;</p> <p>○사업대상자</p>	<p>○ 지역축협,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사육농가에서 신규로 한우고기전문판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p> <p>○ 영업자가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식육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자기소유점포를 소유한 자를 우선한다.</p> <p>○ 브랜드가맹점자금을 지원받아 가맹점을 설치하고 한우고기 또는 돼지고기 브랜드업을 영위하는 자</p>	<p>○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사육농가에서 신규로 한우고기전문판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p> <p>○ (추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품질인증)에 근거한 축산물품질인증단체 (또는 농가) 우선선정</p> <p>○ 2000년도 브랜드육가공시설의 사업대상자(신규 또는 보완)로 선정되어 브랜드가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업체</p> <p>※단 가공시설·가맹점중 한가지 운영자금만 지원받을 수있음</p>	<p>○ 중앙회 통합에 따른 사업대상자 변경</p> <p>○ 축산물품질인증제의 육성 및 활성화 유도</p> <p>○ 2000년도 브랜드가공시설 지원을 받은 브랜드업체의 경영안정화 및 내실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운영자금의 지원 대상자 추가</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lt;식육판매 모범업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조건</li> <li>○ 지원내용</li> <li>○ 모범업소 지정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사업비 : 30백만원(읍자100%)</li> <li>○ 운영자금(지원액의 70%이내) : 원료육의 구매, 대금회수, 입차료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 사업비 : 30백만원(읍자 70%, 자담 30%)</li> <li>○ 삭 제</li> <li>○ (추가) 시·도지사는 이미 현대화시설이 완료되고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모범업소의 경우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지원없이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사업의 지원조건과 형평성을 기함</li> <li>○ 기존 식육판매업소에 시설개선자금지원으로 현대화 유도 등 모범업소 육성</li> <li>○ 시·도의 식육판매모범업소지정 기준 확대</li> </ul>
<p>&lt;LPC, 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종합처리장경영안정자금-지원조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공판장(또는 도매시장)에 쇠고기 부분육 상장 경매한 실적확인서를 첨부 제출 하여야 함</li> <li>-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임</li> <li>○ 부분육 판매실적도 우대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육 유통활성화촉진</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 사유
<p>○ 축산물도매 시장·공판장 출하촉진 자금의 지원 대상 및 조건</p> <p>&lt;브랜드육성가공시설및가맹점 육성&gt; &lt;브랜드업체운영자금지원&gt;</p> <p>○ 사업대상자</p> <p>&lt;오리도축·가공시설&gt;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p>	<p>○ 브랜드가맹점 자금을 지원받아 가맹점을 설치하고 한우고기 또는 돼지고기 브랜드업을 영위하는 자</p> <p>○ (신 설)</p>	<p>○ (추가)쇠고기 부분육 상장경매시에는 계통출하를 통한 도축·도매시보다 100% 가산지원함</p> <p>○ (추가)(품질인증업체 우선 선정)</p> <p>○ 2000년도 브랜드육 가공시설의 사업대상자(신규 또는 보완)로 선정되어 브랜드 가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업체 -브랜드가맹점 자금을 지원받아 가맹점을 설치하고 한우고기 또는 돼지고기 브랜드업을 영위하는 브랜드업체 ※ 단, 가공시설, 가맹점 중 한가지 운영자금만 지원 받을 수 있음</p> <p>○ 가공시설 : 용자 70%, 자담 30%</p>	<p>○ 쇠고기 부분육 상장 유통활성화시책 추진</p> <p>○ 축산물품질제의 육성 및 활성화 유도</p> <p>○ 2000년도 브랜드 가공시설지원을 받은 브랜드업체의 경영안정화 및 내실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운영자금의 지원 대상자 추가</p> <p>○ 가공시설 지원추가</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IV.축종별자율사업</b>  &lt;축협조합경제사업활성화지원&gt;  ○ 신청자격  ○ 지원절차</p> <p>○ 지원내용</p> <p>&lt;중앙회사업장인수&gt;  ○ 신청자격  ○ 지원절차</p> <p>○ 지원내용</p> <p>&lt;축종별축산업추진협의체&gt;  ○ 신청자격  ○ 지원절차</p> <p>○ 지원내용</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 일선축협조합  ○ 조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조합 선정·지원  ○ 조합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p> <p>○ 중앙회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유통거점에 속한 조합들이 컨소시엄 구성  ○ 농협중앙회(축산경제대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인수대상자산의 장부가격기준 50%</p> <p>○ 농협중앙회 한우·돼지·닭담당부서  ○ 농협중앙회(축산경제대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축종별로 특색 있고 추진이 가능한 모든사업</p>	<p>○ 신규사업</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36. 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 사업</b></p> <p><b>I. 축산물안전성 강화</b></p> <p>○ 목 적</p> <p>○ 추진방향</p> <p>○ 세부사업</p> <p>○ 사업비 및 지원기준</p> <p>○ 기 타</p>	<p>○ (신 설)</p>	<p>○ 민간방역기능을 강화, 구제역·돼지 콜레라 등 악성가축 전염병 근절추진</p> <p>○ 가축질병근절대책</p> <p>○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시설개선</p> <p>○ 돼지콜레라예방접종지원</p> <p>○ 농장채혈 및 혈청검사</p> <p>○ 농가소독약품 공급</p> <p>○ 농가방역교육 및 홍보</p> <p>○ 전염병발생 등 신고포상금</p> <p>○ 방역본부 운영및 장비지원</p> <p>○ 동물약품업체 시설개선</p> <p>○ 지원사업비 : 14,753백만원</p> <p>-가축질병대책 : 9,853</p> <p>-동물약품시설 : 4,900</p> <p>○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p> <p>-가축질병대책 : 정액보조</p> <p>-동물약품시설 : 융자</p> <p>· 사업비 50%융자, 연리 8%, 5년거치 5년상환</p> <p>○ 동물약품제조업체 시설개선은 2001년 사업완료</p>	<p>신규사업</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II.가축공제</b></p> <p>○ 공제금 지급 범위</p>	<p>○ 소</p> <p>-정액생산능력이 저하된 종모우 경우</p> <p>○ 말</p> <p>-불임으로 판정된 경우</p> <p>○ 돼 지</p> <p>-종돈, 모돈, 육성돈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는 최저폐사두수 이상 폐사된 경우 (자돈은 제외)</p>	<p>○ 소</p> <p>-(추가)부상범위 :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구</p> <p>-정액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사업주관 기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종모우)</p> <p>○ 말</p> <p>-2년 연속 불임되어 사업주관이 지정한 수의사로부터 불임 판정을 받은 경우</p> <p>○ 돼지</p> <p>-화재, 풍수재로 인한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p>	<p>○ 지급범위의 구체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37.축산물검사 및 가축방역</b></p> <p><b>II.가축방역</b></p> <p>○사업내용</p> <p>○지원기준</p> <p>○사업시행 절차</p> <p>-예방약지원</p> <p>-접종시술비</p> <p>-가축위생 시험소방역 장비</p>	<p>○돼지콜레라 등 예방 접종시술비 지원 사업</p> <p>○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p> <p>○공동방역사업단 지원</p> <p>○가축위생시험소 방역장비</p> <p>○예방접종시술비 : 국비25%, 지방비 25, 자담50</p> <p>○정부지원 예방약 : 11종</p> <p>○두당단가 : 400원</p> <p>-국비 100, 지방비 100, 자담 200</p>	<p>○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p> <p>○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구입지원</p> <p>○(삭 제)</p> <p>○가축위생시험소 방역장비 : 국고 50%, 지방비 50%</p> <p>○예방접종시술비 : 국비 50~60%, 지방비 40~50%</p> <p>○정부지원 예방약 : 12종</p> <p>-종계장 마이코프 라즈마 신규지원</p> <p>-농가 닭뉴캐슬병 추가</p> <p>○두당단가</p> <p>- 소: 1,000원(국비 600)</p> <p>-돼지: 500원(국비 250)</p> <p>○방역차량, 방제차량, 고온고압세척 소각시설</p>	<p>○콜레라 제외</p> <p>○신규지원</p> <p>○사업폐지</p> <p>○신규사업</p> <p>○지원을조정</p> <p>○1종 추가 신규</p> <p>지원확대</p> <p>단가변경</p> <p>신 규</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공수의 운영	○공수의 수당폐지	(전체삭제)	폐 지
-공방단 설치 및 운영지원	○지역별 공동방역 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체삭제)	폐 지
<b>38.학교우유 급식사업</b> ○지원대상          ○사후관리	○학교우유급식희망 유업체          ○(신 설)	○학교우유급식희망 유업체. 단, 보조 우유급식의 경우 집유일원화사업 참여유업체중 학교장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포함	○교과과정이 구분되지 않은 특수학교 불우학생중 에서 초등학생만 별도 지원곤란          ○사후관리 철저

항 목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39.친환경농업 육성사업</b></p> <p><b>I. 친환경 가족농단지</b></p> <p>○ 지원대상자</p> <p>○ 지원사업 메뉴의 범위</p> <p>○ 사후관리</p> <p><b>II. 친 환 경 농업지구</b></p> <p>○ 지원단가</p> <p>○ 지 원 대 상 사업메뉴</p>	<p>○소유농지 2.0ha이하, 10농가이상</p> <p>○토착미생물, 유기자원 생산시설</p> <p>○환경친화형 하우스 및 축사</p> <p>○기타 친환경농업실천에 필요한 시설 등</p> <p>○ 지구당 10억원~20억원</p>	<p>○ 좌 등</p> <p>- 다만, 단지조성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 군수판단하에 2.0ha 이상 농가 일부 참여, 10농가이하의 단지 조성 가능</p> <p>○ 축사신규지원 제한</p> <p>- 조사료, 자급사료확보 가 가능하거나 유기 축산시범사업을 하되 하는 경우 선별 지원</p> <p>○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의 신규 지원 억제</p> <p>○ 시·군단위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협의회 구성·운영</p> <p>○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유기축산 시범사업 지도·관리</p> <p>○ 지구당 10억원</p> <p>○ 유기축산에 필요한 시설</p> <p>○ 축산분뇨지원화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 수처리법에 의거 적정 규모 설치</p>	<p>○ 지침의 탄력적 운영</p> <p>○ 유기축산 시범적 조성</p> <p>○ 사후관리 강화</p> <p>○ 과다투자 방지</p>



항 목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III. 친환경농업 시범마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li> <li>○ INM·IPM 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ha이상 들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친화적인 자재 생산시설은 효과검증 자재에 한함</li> <li>○ 친환경농업육성 추진 협의회 구성·운영</li> <li>○ 유기축산시범사업 지도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가 수행</li> <li>○ 농촌진흥청, 도농업 기술원에서 기술지도 강화</li> <li>○ 사업대상 면적 확대 (100ha 수준)</li> <li>○ INM·IPM실천 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장제, 토양 검정 및 시비처방, 농약잔류량 조사 등</li> <li>- 벼 품종 및 시비량 시범포 설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시설 범위 규정</li> <li>○ 사후관리 강화</li> <li>○ 사후관리 강화</li> <li>○ 논농업직불사업과 차별화</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b>40.농촌가공 산업육성사업</b> <b>I.농산물가공 산업육성</b> ○ 지원대상자	○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일반업체	○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일반업체, 주류제조 면허업체, 명인지정업체	○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주류제조면허업체, 명인지정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신청 허용
○ 시설비	○ 농가공동: 5억원이내 ○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20억원이내	○ 농가공동: 7억원이내 ○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20억원이내	○ 가공공장 규모화를 위해 시설비 상향조정(농가공동)
○ 운영비	○ 포장디자인 개발비: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 용기금형개발비: 업체당최고 50백만원 ○ 홍보물유인비: 업체당최고 5백만원	○ 포장디자인 개발비: 업체당 최고 20백만원 ○ 용기금형개발비: 업체당최고 80백만원 ○ 홍보물유인비: 업체당최고 10백만원	○ 지원한도 상향조정(단가 현실화)을 통해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 운영비 지원 확대
○ 추가지원 대상	○ 기 지원받은 업체중 매출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 컨설팅결과 시설·장비의 보완이 요구되는 업체,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업체	○ 기 운영중인 주류제조 면허업체와 명인지정업체 포함	○ 기 운영중인 주류제조 면허업체와 명인지정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영활성화도모
○ 사업타당성 조사	○ 농림부장관이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에게 사업타당성을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가 유통공사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자선정 및 사후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사업성평가도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 사업비집행의 효율성 제고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b>Ⅲ 특산단지육성</b></p> <p>○ 단지당 지원기준</p> <p>○ 사업성 검토 평점표&lt;신규 단지용&gt; ○ [별표 1]</p>	<p>○ 운영비 지원기준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용자 : 42백만원 · 자담 : 18백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u>배점</u></p> <p>○ 시장성 24점 - 판로 확보, 홍보전략 등</p> <p>○ 사업추진기반 12 - 노동력·원료 조달 용이도 등</p> <p>○ 대표자 능력 8 - 은행거래 신용도</p> <p>○ 수익성 5 - 투자수익율 등</p>	<p>○ 운영비 지원기준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용자 : 56백만원 · 자담 : 24백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u>배점</u></p> <p>○ 시장성 30점 - 판로 확보, 홍보전략 등</p> <p>○ 사업추진기반 10 - 노동력·원료 조달 용이도 등</p> <p>○ 대표자 능력 5 - 은행거래 신용도</p> <p>○ 수익성 4 - 투자수익율 등</p>	<p>○ 우수단지에 대한 운영비 지원확대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p> <p>○ 사업부실 사전 방지를 위하여, 사업성 검토시 제품의 시장성(판로 확보, 홍보 등)의 배점을 상향 조정</p>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b>41.농업경영 종합자금제</b>			
○지원규모	○1,605억원 -국고융자 1,285억원, 농협자금 320억원	○2,105억원(안) -국고융자 1,685억원, 농협자금 420억원	○500억원 증
○자금연계 운용	○종합자금 단독 운용	○농기업경영자금,축산 전업경영자금과연계 운용	○재원조달방법은현행 대로하되지원방법은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침에 따름
○지원대상자	○(신 설)	○개보수·운영자금 지원대상 -쌀분야 :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 는 농업법인 -원예특작·축산분야 유통·가공·저장사업 : 정책자금(지방자치 단체 자체 사업 포함) 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중인 농업인 농업법인 -20두 이상의 말을 사육 하는 축산농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업사업자	○기존 농기업경영자금 및 축산전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중 2000년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영체 를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제출대상	○농업법인은 복식부기 에 의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1년이상)를 제출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 기록 및 재무제표(1년 이상) 제출 대상 -농업법인, 신청시점 현재 종합자금 신청 금액을 포함한 금융 기관 대출잔액 합계 액이 3억원 이상인 농업인	○금융기관 차입금액이 고액인 개인도 재무제표 제출대상에 포함하여 농가의 재무건전성 확보 도모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자금용도	○시설자금 : 생산·재배 시설, 저장·유통·가공 시설 및 증축자금, 토지 매입자금 등  ○일회성 농자재로서 다른 정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 (예: 봉지, 포장상자 등 포장재, 반사필름 등)에는 운영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시설자금 : 생산·재배 시설, 저장·유통·가공 시설 및 증축자금, 토지 매입자금, <u>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u> 등  ○(삭 제)	○시설농업의 에너지 절감노력을 촉진하여 생산비용 절감 유도  ○운영자금소요액은 「(매출액/회전수)*100%」로 산출되며 일종의 신용 한도제이므로 운영자금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예거하는것은 무의미함
○종합자금 취급사무소	○원예특작 : 농협 시·군 지부등 중앙회 소속 각급 사무소와 농협 중앙회장의 대출취급 승인을 얻은 지역농협·전문농협·인삼협  ○축산 : 농협중앙회장의 대출취급승인을 얻은 지역축협·업종축협 ※취급사무소가 지정 되지 않거나 지정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농협 시·군 지부가 품목·축종 구분 없이 대출취급 가능	○농협 시·군 지부등 <u>중앙회 소속 각급 사무소</u> ○ <u>농협중앙회장이 지정 한 지역농·축협, 품목 별·업종별 조합</u> ※ <u>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축산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취급함</u>	○농협중앙회 지부·지점 과 농·축·삼협 조합의 대출업무를 원예특작 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구분치 않음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취급자금	○(신 설)	○농업경영종합자금, 농기업경영자금은 원칙적으로전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축산전업경영자금은 축산분야에만 지원	○종합자금과 연계 운용되는 경영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함
○심사방법	○(신 설)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가점부여고려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가입농가 - 친환경농산물 표시 농가(품질인증 등) - 신지식농업인, 새농민 상수상자 - 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 - 품질개선노력 : 규격돈 생산, 거세축생산, 종축등록생산, 우수 축출하, 1등급 원유생산등 - 기타: 집유일원화 참여, 축산분뇨자원화처리 등	
	○(신 설)	○200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기업경영자금, 축산 전업경영자금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경영체가 재대출이나 대환을 통해 자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 대출에 한하여「농업경영종합 자금세부시행지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의 「2000년도 농기업경영자금대출 업무방법」, 「2000년축산 전업경영자금세부집행계획」에 따라 심사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 사 후 관 리 의 체계화, 합리화	○ 각취급사무소는 개별경 영체에 관한 채권-채 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거래기록 등 보유정보 를 활용한 일상적 사후 관리를 기반으로 연 2회 이상 영농상태 및 경영상황에 대해 점검 실시 및 추가지원에 반영  ○ (신 설)  ○ (각취급사무소는) ..... 회계기록 및 경영 일지를 기록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추가 지원시 우대 ○ 농·축·삼협과 행정 ·지도기관 합동으로 「사후관리점검반」 을 구성, 점검 실시	○ 각취급사무소는 개별경 영체에 관한 채권-채 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거래기록 등 보유정 보를 활용한 일상적 사후관리를 기반으로 연 1회 이상 「경영 실태조사」 실시  ○ 농협중앙회는 종합 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 추진실태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방법 에 따라 매반기별로 여신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신용대표이사에 보고  ○ (삭 제)  ○ (삭 제)	○ 농업인이 경영실태 노출을 기피하는 행정 규제적 「사후관리」로 부터 다양한 경영관련 지표를 산출 경영성과 평가와 사후지도, 추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경영실태조사」로 전환  ○ 대출기관의 업무실태 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자금지원 체계의 적정한 운용 을 보장  ○ 실효성없는 방안임 -대출기관은 회계와 경 영기록을 도울 수 있 는 인력과 조직을 갖 출 수 없음 ○ 실효성없는 방안임 -경영실태조사로 대 체하고 중앙회에 의 한 여신검사를 강화 해야 함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 사후 관리의 체계화, 합리화	○ 시·군은 농·축·삼협의 사후관리업무에 협조하는 한편, 농·축·삼협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사후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취급사무소에 통지하며 문제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시·군은 농·축·삼협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시·군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재규정
○ 논에 타작물 재배관련 규제	○ 농업진흥지역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거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삭 제)	○ 종합자금은 일시에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의미함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42 농림기술개발 사업</b></p> <p>○ 지원조건 - 기업부담 기준</p> <p>○ 과제공모 - 첨단기술 개발과제</p> <p>○ “주관연구 기관의 자격 요건” 보완</p>	<p>○ 기업참여시 사업비 지원기준 - 대기업 :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20%까지 지원</p> <p>○ 기술개발 수준이상 대적으로 높은 기술</p> <p>○ 개발보급시 농림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p>	<p>○ 기업참여시 기업부담 비율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 중소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20%이상부담</p> <p>○ 생명공학, 자동 제어 기술 등 첨단기술이 포함된 기술</p> <p>○ 기술개발방식이 타분야의 첨단기술 등을 응용한 선진화기술</p> <p>○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 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면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p>	<p>○ 기업 대응자금(matching fund)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p> <p>- 현행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액이 총연구개발비의 50, 80%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기업이 지원한도액 이상을 자발적으로 부담코자 할 때에 현행 규정은 제약으로 작용함</p> <p>- 기업부담비율 한도액을 개방(즉 기업의 최저부담기준비율을 명시)하여 정부출연금은 연구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seed money성 자금임을 명확히 함</p> <p>○ 첨단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p> <p>○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범위를 추가 보완</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45. 후계 농업인육성</p> <p>○ 분야별 지원 대상사업</p> <p>○ 대상자 선정</p>	<p>&lt;경종농업분야&gt;</p> <p>○ 농지구입, 고정설 온실, ..... <u>묘목구입</u>, ..... ..... ...대형농기계... .....</p> <p>&lt;축산분야&gt;</p> <p>○ 축사신축 및 시설 개선,..... ..... 대형농기계..... .....</p> <p>※ 지원자금은 영농 기반을..... ..... 사용하여서는 안됨</p> <p>&lt;선정기준&gt;</p> <p>○ 다음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점수가 <u>400점</u> 이상된 자..... .....</p>	<p>&lt;경종농업분야&gt;</p> <p>○ 농지구입, 고정설 온실, ..... <u>묘목 및 종근구입</u>, ..... ...대형농기계(<u>지 원금의 50%이내</u>)... .....</p> <p>&lt;축산분야&gt;</p> <p>○ 축사신축 및 시설 개선,..... ..... 대형농기계(<u>지원 금의 50%이내</u>)..... .....</p> <p>※ 지원자금은 영농 기반을..... ..... 사용하여서는 안됨 (<u>토지구입의 경우 영농규모화사업 지침 준용</u>)</p> <p>&lt;선정기준&gt;</p> <p>○ 다음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점수가 <u>360점</u> 이상된 자..... .....</p>	<p>○ 과수묘목보다 가격이 높은 화훼의 종근을 추가하여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가격이 1인평균 지원금 보다 높아 지원금의 50%이내로 한정</p> <p>○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가격이 1인평균 지원금 보다 높아 지원금의 50%이내로 한정</p> <p>○ 농지의 경우 평당 지원금액이 명시 되지않아 질의가 찾아 규모화사업 지침을 준용함을 명시</p> <p>○ 평가기준의 총점을 700점에서 600점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므로 360점으로 하향조정</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평가기준>	<p>&lt;영농정착의욕(150점)&gt;</p> <p>-상 : 150점(신청자의 15%이내)</p> <p>-중 : 120점(신청자의 70%이내)</p> <p>-하 : 90점(신청자의 15%이내)</p> <p>&lt;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150점)&gt;</p> <p>○ 학력(100점)</p> <p>-농업계대학, 한국 농업전문학교, 여주 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 : 100점</p> <p>-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 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졸업자 : 80점</p> <p>-일반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p> <p>-기타 학교졸업자 : 40점</p> <p>“신 설”</p>	<p>&lt;영농정착의욕(100점)&gt;</p> <p>-상: 100점(신청자의 20%이내)</p> <p>-중 : 70점(신청자의 60%이내)</p> <p>-하 : 40점(신청자의 20%이내)</p> <p>&lt;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130점)&gt;</p> <p>○ 학력(80점)</p> <p>&lt;남자의 경우&gt;</p> <p>-농업계대학, 한국 농업전문학교, 여주 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 : 80점</p> <p>-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 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졸업자 : 70점</p> <p>-일반대학(4년제)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p> <p>-기타 학교졸업자 : 40점</p> <p>&lt;여자의 경우&gt;</p> <p>-농대, 농전, 자영농과 졸업자 : 80점</p> <p>-일반대학, 농고졸업자 : 70점</p> <p>-기타 학교졸업자 : 60점</p>	<p>○ 농업기술센터 등의 주관적 평가 가능성을 최소화</p> <p>○ 학력은 낮지만 영농 정착의욕이 강한 자가 영농정착율이 높은점 감안하여 학력점수를 하향조정</p> <p>※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는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선정에 지장없음</p> <p>○ 현선정기준은 평가 기준에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되므로 여성이 선정되기 불리한 상황으로 여성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완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lt;영농기반 150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ha이상 : 150점</li> <li>- 1.5ha~2.0ha미만 : 125점</li> <li>- 1.0ha~1.5ha미만 : 100점</li> <li>- 0.5ha~1.0ha미만 : 75점</li> </ul> <p>○(신 설)</p> <p>* 본인·배우자 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 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p> <p>* 서면계약한 임차 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p> <p>&lt;영농사업계획(150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 : 150점(신청자의 15%이내)</li> <li>-중 : 120점(신청자의 70%이내)</li> <li>-하 : 90점(신청자의 15%이내)</li> </ul>	<p>&lt;영농기반 170점&gt;</p> <p>○ 남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ha이상 : 170점</li> <li>- 1.5ha~2.0ha미만 : 150점</li> <li>- 1.0ha~1.5ha미만 : 130점</li> <li>- 0.5ha~1.0ha미만 : 90점</li> <li>- 0.2ha~0.5ha미만 : 50점</li> </ul> <p>○ 여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ha이상 : 170점</li> <li>- 1.0ha~1.5ha미만 : 150점</li> <li>- 0.5ha~1.0ha미만 : 120점</li> <li>- 0.2ha~0.5ha미만 : 80점</li> </ul> <p>&lt;공통요건&gt;</p> <p>* 본인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 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p> <p>* 서면계약한 0.5ha 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p> <p>&lt;영농사업계획(100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지역의 적합성 및 재배기술상의 문제점 : 40점</li> <li>-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 30점</li> <li>- 생산 및 판매계획 : 20점</li> <li>-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10점</li> </ul>	<p>○ 자가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보다 영농정착율이 높은 점을 감안, 농지 소유자에게 가점기회 확대</p> <p>○ 현선정기준은 평가 기준에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되므로 여성이 선정 되기 불리한 상황으로 여성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완화</p> <p>○ 여성의 경우 영농기반을 남자보다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완화 하였으므로 배우자 소유의 영농기반을 인정할 수 없도록 강화</p> <p>○ 농업기술센터 등의 주관적 평가 가능성을 최소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 대상자 순위 결정	<p>-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선정 예정인원의 20%범위내에서 평가점수가 400점이상인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p> <p>• 단, 배우자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 ……… 선정할 수 없으며, 여성(영농)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우선 선정</p>	“삭 제”	○ 학력 및 영농기반 평가기준을 남자보다 완화하여 여성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므로 삭제
○ 사업취소사유	<p>○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보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 …………… 격일·격주·2~3회 교대근무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자 제외)</p>	<p>○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보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 …………… 격일·격주·2~3회 교대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p>	○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출·선임된 농·축협조합장 등은 지역사회와 여론주도적 농업인의 권익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가족 또는 위탁영농이 가능한 점을 고려, 사업취소 사유에서 제외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4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b></p> <p>○ 지원대상</p>	<p>○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행정구역개편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기 지원중인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학생이 졸업할 때 까지 지원</p>	<p>○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행정구역개편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기 지원중인 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만 지원</p> <p>○ 경지(신설)소유규모 10,000㎡미만이나 대지, 건물 등 공시지가 기준 170백만원이상인 경우</p>	<p>○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감안 당해연도에 지원 (현행) 졸업할 때까지 지원→(개정)당해연도만 지원</p> <p>○ 경지규모는 해당되거나 건물소유가 많은자 포함되어 제외</p>
<p><b>47. 농업경영 컨설팅지원</b></p> <p>○ 지원대상</p>	<p>○ 둘이상의 개별농업 경영체는 공동의 계약주체로서 지원 가능</p>	<p>○ (삭제)</p>	<p>○ 공동계약의 실익이 미약하며, 개별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서비스의 책임성 강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 사업주관기관</p> <p>○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 - 신청자격</p> <p>○ 컨설팅공급기관 업체 지정 - 지정신청자격</p> <p>- 지정우선순위</p>	<p>○ (신설)</p> <p>○ .....농업상호교육을 3일이상 이수한 경영체 로서..</p> <p>○ 1개 컨설팅기관·업체는.....4건을 초과할 수 없음</p> <p>○ (신설)</p>	<p>○ 시·군과의 협조 - 시·도지사는 시·군 담당직원에 대해 컨설팅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관리상의 역할 분담 등 시·군과의 업무협조계획을 수립하여 실시</p> <p>-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전담직원 지정 및 농가홍보를 실시하고 농가(농업법인)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유도</p> <p>○ ..... 3일이상 이수하였거나 계약이후 일정시 기내에 이수할 예정인...</p> <p>○ 삭제</p> <p>○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p>	<p>○ 시·도 및 시·군 간의 업무협조 및 시·군의 역할 강화</p> <p>○ 농촌의 낮은 정보화 보급율을 고려 컴퓨터 교육관련 선정요건 완화</p> <p>○ 컨설팅 공급업체의 자율적인 공급확대 유인을 제공</p> <p>○ 유능한 농업컨설팅 벤처기업의 참여 유도</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 지정절차</p> <p>○ 계약체결유도 및 지원금액 결정</p>	<p>- 시·도지사는 .....컨설팅기관·업체를 10~20개소 지정</p> <p>· 시·도지사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음</p> <p>○ 설명회개최</p> <p>○ 계약체결협의</p> <p>○ (신설 및 자구수정)</p>	<p>- 시도지사는 .....<u>컨설팅기관·업체를 지정</u></p> <p>- 시·도지사가 <u>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u></p> <p>○ 설명회개최</p> <p>○ 계약체결 및 계약승인요청</p> <p>○ 계약체결</p> <p>- 지원대상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계약체결협의를 거쳐 (가)계약서 작성</p> <p>○ 계약승인요청</p> <p>: <u>컨설팅공급기관·업체는 계약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승인 요청</u></p> <p>- <u>컨설팅서비스 수행계획서 1부.</u></p> <p>· <u>수행계획서의 필수항목 : 컨설팅대상농가의 기술 및 경영현황, 개선필요사항, 컨설팅의 주요내용 및 개선목표, 컨설팅의 기대효과</u></p> <p>- <u>3년차 컨설팅사업 지원대상 농가(농업법인)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경영체의 직전년도 또는 직전반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u></p>	<p>○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유능한 컨설팅공급·기관업체의 참여 유도</p> <p>○ 지정절차 간소화</p> <p>○ 제목수정 및 계약 및 승인절차 명확화</p> <p>○ 계약승인요청시 첨부서류 추가</p> <p>- 계획성있는 컨설팅수행을 위해 계획서 사전 제출 요청</p> <p>- 3년차 컨설팅 지원시 재무제표 요구로 경영마인드제고 유도</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 사업비 집행방법</p>	<p>○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보조금을 지급 - (신설)</p> <p>- (신설)</p> <p>○ (신설)</p>	<p>- 단, <u>보조금 및 자부담을 동률병행집행 가능</u></p> <p>※ <u>계약기간 만료후 건설팅업체의 잔금지급요청으로 시·도(시·군)의 현장 확인시 [별표4]의 '지원 대상경영체 실태조사표' 작성</u></p> <p>○ (보조금 병행지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계약금</u> 경영현황기술서 제출후 현장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고 자부담금이 입금 되면 보조금 포함 하여 지급</li> <li>· <u>중도금</u> 건설팅 추진상황, 보고서 제출 후 현장 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점이 없고 자부담금이 입금되면 보조금 포함하여 지급</li> </ul> <p>- <u>잔 금</u> 건설팅 결과 보고서(혹은 건설팅 결과 요약 보고) 제출 후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점이 없고, 자부담금이 입금되면 보조금 포함하여 지급</p>	<p>○ 시·도의 사정에 따라 경영체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보조금의 동률병행 집행 허용</p> <p>○ 병행지원의 경우 자부담금 계좌입금 확인 필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보조금 교부신청</p> <p>○사후관리기관</p> <p>○보고사항</p>	<p>○(신설)</p> <p>○시·도지사</p> <p>○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컨설팅계약기간중...2년동안...반기별로 점검 농림부에 보고</p> <p>- 컨설팅계약 체결상황보고: 515까지</p> <p>- (신설)</p> <p>○시·도지사는.. ..문서사본일체를 농림부에 수시제출</p> <p>○컨설팅기관·업체는.....모든 문서를.....제출해야함.</p>	<p>※ <u>계약기간 만료후 컨설팅업체의 잔금지급 요청시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표5] '농업경영컨설팅 이행 확인서' 첨부</u></p> <p>○시·도지사 및 시장·군수</p> <p>○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컨설팅계약기간중.....1년 동안.....연도말을 기준으로 점검, 농림부에 보고</p> <p>○매월말보고</p> <p>-사업검정보고: 익년도 1231까지</p> <p>○(삭제)</p> <p>○컨설팅기관·업체는 컨설팅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계약건별로 컨설팅수행계획서, 경영현황기술서,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시·도(시·군)에 제출하는 해당시점에 농림부(농촌인력과)에도 동자료를 E-mail (훈글파일 또는 엑셀 파일로 작성)로 즉시 송부</p> <p>※ E-mail 주소; agrimon@maf.go.kr</p> <p>· 모든컨설팅공급기관업체는 자체 E-Mail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함</p>	<p>○시·군의 심도있는 사후관리와 컨설팅의 거시적인 효과 지향</p> <p>○컨설팅 추진상황과약 등 각도간 정보공유차원에서 수시보고 필요</p> <p>○행정업무 간소화</p> <p>○컨설팅공급기관·업체의 자료제출 효율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b>51.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b></p> <p>○ 관광농원 개발 사업</p> <p>○ 사업시행</p>	<p>○ 숙박시설은 취사 시설을 갖춘 농원 여관을 원칙으로 하고 여관·여인숙 시설은 제외함.</p> <p>○ (신 설)</p> <p>○ (신 설)</p>	<p>○ 숙박시설은 관광농원의 취지에 맞게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 되지 않도록 함.</p> <p>○ 관광농원에서는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은 불가함.</p> <p>○ 시장군수는 용자사업자로 확정된자가 일정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사유등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용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용자사업자로 확정된자에게 통지하고 각서를 징구하여 불용,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p>	<p>○ 공중위생법시행 규칙폐지(2000.3.16)로 법적기준이 없어짐 (규제완화)</p> <p>○ 단란주점에서 영업불가업종을 명확히 명시하여 법해석 오류 방지</p> <p>○ 사업관리 강화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도모</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농원 사업의 양도 양수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농원사업자가 관광농원의 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때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li> <li>○ 임차사업자가 관광농원 사업 운영의 공동참여자로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변경승인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li>○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삭제 (규제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li> </ul> <p><b>52. 농공단지 조성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선정대상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과 정산절차를 제외한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 지정, 사업절차등은 지원 사업과 동일</li> <li>○ (신 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어촌 정비법 및 제반관련규정에 따라야 함.</li> <li>○ 농공단지선정시에는 지역적특성을 살려 업종별, 형태별, 입지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주예정업체가 선호하는 적정지역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문 정리</li> <li>○ 농공단지 내실화 강화</li> </ul>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b>55.농어촌생활 환경정비 1.정주권개발</b>			
○사업대상면 선정	○(신 설)	○1단계사업 전체가 완료된 시·군에 대하여는 면개발계획수립 내용에 따라 2단계사업계획 수립·추진	○지방양여금이 면수에 따라 계속 지원되므로 2단계추진 근거마련
○지원조건	○ 지방양여금 70% ○ 지방비 30%	○지방양여금 80% ○지방비 20%	○지방양여금 규모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어려워 하향조정
○정보통신기반 시설설치	○(신 설)	○마을회관내 정보통신기반 시설설치 가능	○농산물의 신속한 유통 및 주민의 정보회수준 향상목적
○농촌빈집철거	○(신 설)	○사용하지않는 빈집의 철거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	○농어촌정비법개정시 반영된 사항 추가
○융자금의 사후관리	○(신 설)	-사업시행자는 주택융자대상자가 건축을 하지않아 연내에 융자금 집행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를 변경하여 융자금 집행	-융자금의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불용 및 이월 방지
<b>II. 문화마을</b>			
○사업추진절차	○(신 설)	○ 예정지구선정기본 방침시달 (표)	○불필요한 지구선정에 따른 행정간소화
○지원조건	○ 지방양여금 70% ○ 지방비 30%	○지방양여금 80% ○지방비 20%	○지방양여금 규모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어려워 하향조정
○지구선정기준	○(신 설)	○ 농림부의 예정지구선정 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예정지구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지구선정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선정절차	○(신 설)	○ 면당 1개소씩 문화마을 조성이 완료된 시·군은 2단계로 계속 추진	○지역여건과 실정을 반영하여 주민숙원 해결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기본계획수립	○국무총리훈령 제 299호에 의한 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 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내지 제4호의 구 비서류를 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서에 반영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의함
	○(신 설)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수립시 필요한 경우 경관형성계획수립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 조사를 실시토록 함	○농촌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내용 이행
○사업시행계획	○(신 설)	○시행계획수립시 사업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편입될 경우 무상 증·양여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후 승인토록 함	○국·공유지의 관리 및 소관을 명확히 함
○정보통신기반 시설설치	○(신 설)	○마을회관내 정보통신기반 시설설치 가능	○농산물의 신속한 유통 및 주민의 정보화수준 향상목적
	○(신 설)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고시하고,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계획결정권자에게 통보토록 함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사업시행	○주택건축용자지원을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수한 주택을 우선지원	○조성용지계약체결일로부터 용자지원은 2년을 원칙으로 함 단, 대상자가 실적이나,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주택건축촉진으로 사업효과 조기 거양
○ 행정사항	○(신 설)	○농어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한 기획기술지원을 위한 연 구등의 경비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활용범위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p>56.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p> <p>2. 시책 및 추진 방향</p> <p>3. 지구선정기준</p> <p>4. 사업지구확정</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 관정의 지하수수질보전과 위생적인 물공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실시</p> <p>○ 시설규모 결정시 지하수 부존량과 수요량, 마을 인구, 농업용수량등 수요와 이용측면을 고려하고, 전기료등 부담능력을 검토</p> <p>- 상수도계획수립 또는 수립예정지는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제외하고</p> <p>- 개발계획수립시는 상수도 부서의 중복여부를 확인 받도록 함</p> <p>○ 시설완공후 이용이 저조 하거나,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미진한 마을이 있는 시군은 전년 대비 사업량 축소토록 함 (역인센티브도입)</p>	<p>○ 사업추진목적 및 시설의 선량한 관리</p> <p>-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반영</p> <p>○ 이용자 자체 유지 관리조직 구성 및 시설에 대한 시군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p>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 사유
<b>57. 산림경영장비 지원</b> ○세부사업 추가	○산림경영장비 지원 -	①임업기계장비 구입 지원 ②임업기계장비센터 설치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센터 설치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산림경영장비 지원사업 명칭을 변경
<b>60.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b> ○세부사업중 일부 삭제 -	①임도시설 ②임도시공장비 지원 ③사방사업	①임도시설 삭제 ②사방사업	사업종료
<b>61. 임산소득증대</b>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밤 방제장비 지원 단가 인상 ○생산단지 지원 확대 ○표고재배시설 지원비율 조정	○20,000천원/대 ○송이주산단지 지원 - 1개소 10억원 ○국고20%, 지방비 20%, 융자20%, 자부담40%	○23,000천원/대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3개소, 30억원 ※송이, 관상산림 식물, 산머루·더덕 등 집단재배 지내 작업로 시설 ○2001년은 현행과 동일 ○2002년 - 국고10%, 지방비 10%, 융자40%, 자부담40% ○2003년 이후 - 융자70%, 자부담 30%	차량가격 인상요인 반영 고소득 품목 육성 적정 재배규모 유지를 통해 과잉생산 예방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b>62. 임산물 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 시설 지원</b> <임산물 이용·가공 시설 지원> ○ 간벌소경재 활용 장비 지원 대상자 확대 ○ 국산 임산물 구입 자금 지원대상자 확대	○ 산림조합 ○ 국산 임산물 가공업자	○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밤생산자 ○ 산불피해목 및 재활용 폐목재 가공업자	○ 간벌사업의 효율적 추진 ○ 동해안 산불 피해목 및 폐목재 활용 촉진
<b>64. 임산물유통개선 지원</b> <임산물유통구조개선> ○ 세부사업중 일부 삭제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선정 방법 변경 - 사업선정 - 지원대상	○ 임산물유통시설 설치 ○ 임산물공판장 시설 ○ 농림수산물물류센터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임산물직거래 - 산림청 - 임산물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삭 제 ○ 삭 제 ○ 농림수산물물류센터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임산물직거래 - 시·도 -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생산·가공법인 직판장 개설자	신규설치사업은 종료하고 기존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 " 사업량 확대 (15명→50명) 지원대상자 확대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 경 사 유
<p>&lt;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gt;</p> <p>○세부사업 신설</p>	<p>○임산물 저장시설</p>	<p>○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p>	<p>건조시설 신규지원</p>
<p><b>68. 산촌종합개발</b></p> <p>○사전설계단가 상향 조정</p>	<p>○마을당 61백만원</p>	<p>○마을당 63백만원</p>	<p>인상요인 반영</p>
<p><b>70. 산림자원조성</b></p> <p>&lt;조림·육림·묘목 생산&gt;</p> <p>○세부사업 추가</p>	<p>-</p>	<p>○동해안 산불피해 복구조림</p> <p>- 송이 복원조림 (국고99%지방비10%)</p> <p>- 경관조림 (국고70%지방비30%)</p>	<p>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지원</p>

## ※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여 백

## ※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 대출제도 概觀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2) 신용대출

○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500만원

- 보증부신용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5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 연대보증인은 1인을 원칙으로 함

(3) 담보대출

○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대출가능금액
○ 부동산	○ 감정평가액의 80%이내에서 선순위권리
- 아파트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 연립단독주택	○ 감정평가액의 70%이내에서 "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감정평가액의 40%이내에서 "
- 기타부동산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
○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 예입액의 90%이내
○ 공제증권	○ 해지환급금의 90%이내
○ 신용보증서	○ 보증금액의 100%이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금의 100%이내
-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금의 100%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금의 100%이내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 보증기금의 100%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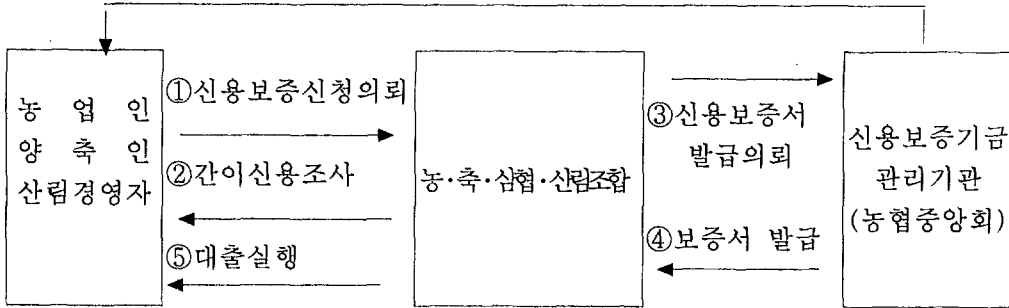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정식 신용조사 및 심사



○ 보증한도(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개인 : 신용보증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누계액 15억원

※ 금차보증신청금액을 포함한 신용보증누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함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5,000만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간이신용조사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5) 후취담보대출 적용기준

담보등급	대상 담보물 종류	대출비율
갑 류	○ 대지, 농지, 초지 및 임야 등 부지류 ○ 주택, 숙박시설, 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	○ 투자금액의 81 ~ 90%
을 류	○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 창고,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 등 창고류 ○ 기계·기구 및 장치 등 기계류	○ 투자금액의 61 ~ 80%
병 류	○ 유리온실, 철골Pet온실 등 온실류 ○ 선박, 어선 등 어로시설류 ○ 우사, 돈사 및 계사 등 축사류 ○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	○ 투자금액의 41 ~ 60%

(주) 이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 등		개인 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교부 서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 확인 서류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신용 및 대출 심사 서류	○ 사업계획서 ○ 월별공정계획표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개별지가확인원 ○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 화재공제(보험)증권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2) 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 법무사 수수료
  - 기본수수료(건당) : 50,000원
  - 가산수수료

설정액	보수누진액	비 고
10백만원 까지	10,000원 가산	
20백만원 까지	13,000원 가산	
20백만원 초과 2억원 까지 20백만원마다	11,000원씩 가산	단수가 20백만원 미만은 절상
2억원 초과하는 경우 20백만원마다	10,000원씩 가산	

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 일당 : 20,000원 이상 50,000원 이내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1통마다 900원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5백만원 이하	면제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0,000원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0,000원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70,000원
1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150,000원
5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 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

○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2 % - 0.5 %

- 법인 : 연율 0.4 % - 0.8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

#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은 벌레가 먹고 못생겨도 더 맛 있고 안전해요

유기재배



농약·화학비료 사용않고 재배

무농약재배



농약 사용않고 재배

저농약재배



농약 1/2이하 사용 재배

일반재배



농약·비료 적정사용 재배

품질인증 농산물은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